

인도주의적 멸절

김성엽**

원주민 아동 동화 정책을 통해 본
미국, 호주, 캐나다의 정착민
국가 건설과 생명정치*

초록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19세기 말부터 공히 원주민 아동을 주류 사회에 동화시키려는 포괄적인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정책들의 공통된 뿌리는 정착민 사회에서 19세기 초부터 조금씩 제기된 인도주의적 보호론이었다. 보호론자들은 주변부 정착민의 폭력으로부터 원주민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문명화를 앞당기려면, 중앙화된 국가권력이 원주민의 삶에 보다 깊숙이 파고들어 가족관계, 섹슈얼리티, 공동체생활, 생활습관의 변화를 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세기 후반 강화된 국가권력 속에서 실제로 이런 ‘내밀한’ 통치를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자, 미국, 호주, 캐나다 정부는 인구집단으로서 원주민들의 동태적 추이를 염두에 둔 선택적 동화 정책, 즉 ‘퇴행적인’ 원주민 기성세대로부터 ‘때묻지 않은’ 아동들만 구제하여 정착민 사회의 인종질서와 젠더질서에 편입시키려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교육기관을 통한 문명화에, 호주에서는 혼혈아의 흡수에 주력한다는 차이가 있었지만, 넓게 보면 이 정책들의 근저에는 공히, 원주민의 미래 세대만 근대적 개인으로 탈바꿈시켜 생존하도록 돕고 기성 세대는 도태되도록 놔두려는 정착민 국가의 특정한 생명정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 19세기 말부터 모습을 갖춘 정착민 국가의 이런 근대적 통치 방식은 무력 대치를 앞세운 이전 시기의 식민팽창 방식과 일견 차별성이 두드러지지만, 궁극적으로 그 효과에 있어서는 원주민들의 집단적 역량과 입지를 끊임없이 약화시켜 나가려는 정착민 식민주의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중앙권력과 주변부 정착민 사이의 오랜 타협 속에 다듬어진 이 새로운 통치 방

* 본 연구는 2022년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학 강연-집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논문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준 남승운, 유혜강, 신혜인, 하지수 학생, 김은형, 김정하, 김혜주, 이동신, 이민용 교수, 그리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서양사학 전공 부교수

식은 인도주의적 보호, 과학적 인구관리를 앞세움으로써, 오히려 이전보다 은밀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원주민들의 멸절을 국가 권력 주도로 추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주제어 원주민, 정착민 식민주의, 인도주의, 문명화, 동화, 근대국가, 생명정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엽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원주민 아동을 대다수를 기숙학교에 보내려는 국가적 사업이 추진되었다.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정부의 지원하에 종교단체 등이 운영한 이 기숙학교들의 공통된 목표는, 원주민 아동을 문명화하여 주류 사회에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많은 경우 학교들은 의도적으로 원주민 아동들과 가족 공동체 사이의 정서적·문화적·사회적 유대를 약화하려 노력했으며, 근래의 슬한 생존자 증언과 연구들이 말해 주듯, 근대적 자기절제와 근면함을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아동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미시적 통제와 폭력을 행사하였다. 오래도록 세간의 무관심 속에 파묻혀 있던 원주민 기숙학교들의 실상에 대해 지난 한 세대 동안 비로소 본격적인 조사와 회고, 반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2021년 캐나다 서스캐처원(Saskatchewan)주의 한 기숙학교 부지에서 751구의 익명의 아동 시신이 발견된 것을 기점으로 캐나다 다른 지역 및 미국의 과거 기숙학교 부지들에서도 수많은 시신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 원주민 아동에 대한 북미 기숙학교들의 폭력의 역사는 이제야 그 전모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¹

1 “Canada discovers 751 unmarked graves at former residential school,” *The Guardian*, 24 Jun 202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jun/24/canada-school-graves-discovery-saskatchewan> (접속일: 2023.2.25.); “Nearly 100 ‘potential human burials’ discovered at British Columbia school,” *The Guardian*, 26 Jan 202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jan/26/nearly-100-potential-human-burials-discovered-british-columbia-school-indigenous-people> (접속일: 2023.2.25.); “US identifies more than 50 Native American boarding school burial sites,” *The Guardian*, 11 May 2022.

한편 비슷한 시기 호주에서는 원주민과 비원주민 사이의 혼혈아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내어 고아원과 같은 국가 시설에 수용하면서, 궁극적으로 백인 가정에 입양시키려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주로 원주민 여성의 자녀로서 원주민 사회에서 키우고 있던 이 혼혈아들은, 주류 사회에 강제로 ‘흡수’되면서 생모와의 연이 영구적으로 끊어지곤 하였다. 역사학자 피터 리드(Peter Read)가 1981년 내놓은 책에서 이 혼혈아들을 “빼앗긴 세대”(stolen generations)라 칭하며 학계와 대중의 관심을 일깨운 것을 계기로, 혼혈 원주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호주 정부의 강압적 정책의 역사는 몇 세대가 지나 조금씩 진상이 규명되고 있다.² 나아가 많은 학자와 원주민들은 이 정책의 파괴적 여파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³

원주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국, 캐나다, 호주의 이 정책들은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명백한 차이가 있지만, 원주민들 중에서도 새로운 세대를 집중적으로 주류 사회에 동화시키려 했으며, 이를 위해 국가 권력이 원주민들의 가정과 공동체 생활에 깊이 개입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책 수립 과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2/may/11/native-american-children-schools-abuse-burial-sites> (접속일: 2023.2.25.); “Native American elders recall abuse at US government boarding schools,” *The Guardian*, 9 Jul 2022,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2/jul/09/native-american-elders-us-government-schools-oklahoma> (접속일: 2023.2.25.).

2 Peter Read (1981; 1998), *The Stolen Generations: The Removal of Aboriginal Children in New South Wales 1883 to 1969*, 2nd ed. Sydney: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Aboriginal Affairs. 이 아동들은 동화 정책의 대상이 되기 전까지 원주민 가정에서 자라며 원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들을 ‘혼혈아’라 하기보다 주로 ‘원주민 아동’이라 칭한다.

3 “Trauma and poverty transferred directly to children of stolen generations – study,” *The Guardian*, 12 Jun 2019.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9/jun/13/trauma-and-poverty-transferred-directly-to-children-of-stolen-generations-study> (접속일: 2023.2.25.); “Stolen generation survivors in Victoria to receive \$100,000 payments through redress scheme,” *The Guardian*, 3 Mar 2022.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2/mar/03/stolen-generation-survivors-in-victoria-to-receive-100000-payments-through-redress-scheme> (접속일: 2023.2.25.).

정에서 서로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⁴ 세 국가에서 비슷한 시기에 이런 포괄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이 시행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답의 실마리는 해외 식민주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근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정착민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착민 식민주의란 피식민 인구를 직접 통치하거나 착취하려는 유형의 식민주의와 달리, 식민 침입자들이 식민지의 땅과 자원을 독차지하려 하며 이를 위해 원주민의 입지를 끊임없이 줄이려 들고 나아가 존재 자체를 삭제하려 드는 형태의 식민주의를 말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탄생 과정은 정착민 식민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 간주되곤 한다. 학자들은 이 ‘성공적인’ 정착민 사회들에서 폭력적 식민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먼 과거의 일로 치부하는 태도가 널리 퍼져 있지만, 실상 이런 사회에서일수록 식민주의는 계속하여 진행되는 역사적 과정이자, 사회구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근본적인 역사적 토대라 지적한다.⁵

이처럼 미국, 캐나다, 호주의 근현대사 이면에 공히 정착민 식민주의가 깊이 배어 있다고 본다면, 세 국가에서 19세기 말부터 원주민 아동을 대상으로 비슷한 정책이 추진된 것 또한 유사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추측이 충분히 제기될 만하다. 호주와 미국의 원주민 아동 정책을 비교한 마가렛 제이콥스(Margaret Jacobs)의 연구, 미국과 캐나다의 원주민 기숙학교를 비교한 앤드류 울포드(Andrew Woolford)의 연구는, 정착민 식민주의 개념을

4 Margaret D. Jacobs (2009), *White Mother to a Dark Race: Settler Colonialism, Maternalism, and the Removal of Indigenous Children in the American West and Australia 1880-1940*, Lincoln, Nebraska: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p. 51; Christina Firpo and Margaret D. Jacobs (2018), "Taking Children, Ruling Colonies," *Journal of World History* 29(4), pp. 529-562, 특히 pp. 531-532.

5 Patrick Wolfe (2006), "Settler Colonialism and the Elimination of the Native,"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8(4), pp. 387-409; Lorenzo Veracini (2010), *Settler Colonialism: A Theoretical Overview*, New York: Palgrave Macmillan.

중심에 둔 비교사 연구가 세 국가의 원주민 아동 정책에 대한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잘 보여 준다.⁶ 그러나 두 연구를 제외하면 세 국가의 원주민 아동 정책을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드물며, 또한 제이콥스와 울포드의 연구는 19세기 말 이후에 초점을 두기에 원주민 아동 정책을 정착민 식민주의의 긴 역사 속에 위치 지으려는 노력은 부족한 편이다.

19세기 중엽까지의 정착민 식민주의에 대한 근래의 연구들은 길고 복잡한 식민팽창 과정이 미국, 호주, 캐나다의 사회구조와 문화적 태도, 정치경제 체제와 법제에 어떤 족적을 남겼는지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들은 좀 더 이른 시기에 초점을 두기에, 자연스럽게 19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원주민 아동 동화 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분석을 제시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아래 논의하겠지만, 특히 제국 주변부 정착민 식민지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변화들에 비추어 근대 제국 및 국가 건설 과정을 새롭게 파악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중앙화된 근대적 통치가 확립되면서 동시에 원주민 아동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펼쳐지게 된 역사적 원인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민 국가의 원주민 아동 정책을 이전 시기부터의 장기적인 제국/식민지

-
- 6 Margaret D. Jacobs (2009); Andrew Woolford (2015), *This Benevolent Experiment: Indigenous Boarding Schools, Genocide, and Redres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7 Lauren Benton and Lisa Ford (2016), *Rage for Order: The British Empire and the Origins of International Law, 1800-185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Lisa Ford (2021), *The King's Peace: Law and Order in the British Empi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Alan Lester and Fae Dussart (2014), *Colonization and the Origins of Humanitarian Governance: Protecting Aborigines across the Nineteenth-Century British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manda Nettelbeck (2019), *Indigenous Rights and Colonial Subjecthood: Protection and Reform in the Nineteenth-Century British Empi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thel Saler (2015), *The Settlers' Empire: Colonialism and State Formation in America's Old Northwes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통치성 변화와 연결하여 분석하려는 시도를 지금까지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관련 연구 경향이 워낙 최근의 것이어서이기도 하고, 또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중엽까지 장기간의 역사에 대한 비교 분석을 요하는 거대한 작업이어서이기 때문일 것이다.⁸ 본고 역시 물론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대신 지금까지의 다양한 관련 연구들이 여러 측면에서 제기한 시사점들을 보다 넓은 안목에서 종합함으로써 새로운 분석틀과 연구 방향을 찾아내려는 작은 시도이다.

정착민 식민주의가 세 국가 모두에서 원주민 아동 동화 정책을 탄생시킨 근본적인 조건이었다고 해도, 이를 단순히 불변의 역사적 조건으로 취급해서는 19세기 말이라는 특정 시기에 비슷한 성격의 동화 정책이 형성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통치성의 변화에 주목하여 정착민 사회의 국가 건설 과정과 원주민 정책 발전이 서로 긴밀히 연결된 역사적 과정이었음을 강조하려 한다. 호주, 미국, 캐나다에서 정착민 사회의 초기 성장은 공히 중앙권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제국의 주변부에서 분산된 식민팽창과 아래로부터의 정치체 구성 과정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부터 정치적 중앙화가 본격화되고 근대적 국가체제가 자리 잡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정착민 국가의 통치성은 일차적으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생명정치”(biopolitics)라 칭한 근대적 통치성의 일반적 양상에 부합하는 면을 보여 준다. 후술하겠지만, 푸코는 의료, 보건, 복지, 인구통계조사, 학교, 감옥 등 일반적으로 정치적이라 의식하지 않는 영역들에 주목하면서, 이런 영역에서의 새로운 통치 기제를 통해 국가권력이 삶의 내밀한 영역에까지 조용히 침투하여 몸과 마음을 규율하는 것이

8 미국과 호주의 인종적 사고, 인종관계 변천사를 정착민 국가 형성의 긴 역사에 비추어 분석한 Gregory Smithers의 대작이 이런 지향점에 가장 근접한 연구라 할 수 있으나, Smithers는 통치성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호주의 원주민 동화 정책은 논하지만 미국의 원주민 기숙학교에 대해서는 별다른 분석을 내놓지 않는다. Gregory D. Smithers (2017), *Science, Sexuality, and Race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1780-1940*, revised edi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야말로 근대적 통치성의 본질이라 분석한다.⁹ 본고의 주장은 정착민 국가에서도 국가의 성장과 함께 이런 성격의 통치성이 발전했지만, 동시에 이는 정착민 사회로서의 역사적 특질을 깊이 반영한 생명정치로서, 인구집단을 식민-피식민 관계에 따라 구획하고 이들의 생명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식민주의적 태도를 근대적 통치기제와 접목시킨 결과물이었다는 점이다. 원주민 아동 동화 정책의 진화 과정에서 볼 수 있듯, 정착민 식민주의와 근대적 생명정치의 접목은 19세기 동안의 지난한 사회정치적 타협 및 국가건설 과정을 통해 빚어진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원주민 동화 정책의 기원과 전개를 크게 다음과 같은 역사적 궤적 속에 위치시켜 바라봄으로써, 원주민 아동에 대한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정착민 국가 통치성의 역사적 성격, 특히 긴 식민 과정 속에 형성된 정착민 국가 특유의 생명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다가가려 한다:

북미 내륙, 호주 등 주변부를 대상으로 실효적 통치를 확대하려 노력하면서, 19세기 중엽까지 영제국과 미국 연방정부는 공히 한편으로 제국/국가와 주변부 정착민 사이의 문화적·정치적·인종적 유대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원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를 위해서는 중앙의 통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곤 했다. 중앙권력의 힘이 미약했던 시기에 이런 보호 담론은 식민지의 현실에 당장은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착민 국가가 원주민을 대하는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남겼다. 그 태도는 곧, 원주민들이 팽창하는 정착민 사회 안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려면 중앙정부가 그들을 별개의 종속적 인구집단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주민들의 가족관계, 섹슈얼리티, 공동체생활, 생활습관에 깊이 침투하여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와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19세기 후반 강화된 국가권력 속에서 실제로 이런 ‘내밀한’ 통치를 실

— www.kci.go.kr

9 미셸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에 대해서는 주 55와 관련 본문 내용 참조.

행에 옮길 수 있게 되자, 미국, 호주, 캐나다 정부는 인구집단으로서 원주민들의 동태적 추이를 염두에 둔 선택적 동화 정책, 즉 ‘퇴행적인’ 원주민 기성세대로부터 ‘때묻지 않은’ 아동들만 구제하여 정착민 사회의 인종질서와 젠더질서에 편입시키려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교육기관을 통한 문명화에, 호주에서는 혼혈아의 흡수에 주력한다는 차이가 있었지만, 넓게 보면 이 정책들의 근저에는 공히, 원주민의 미래 세대만 근대적 개인으로 탈바꿈시켜 생존하도록 돕고 기성 세대는 도태되도록 놔두려는 정착민 국가의 특정한 생명정치가 자리잡고 있었다. 19세기 말부터 모습을 갖춘 정착민 국가의 이런 근대적 통치 방식은 무력 대치를 앞세운 이전 시기의 식민팽창 방식과 일견 차별성이 두드러지지만, 궁극적으로 그 효과에 있어서는 원주민들의 집단적 역량과 입지를 끊임없이 약화시켜 나가려는 정착민 식민주의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중앙권력과 주변부 정착민 사이의 오랜 타협 속에 다듬어진 이 새로운 통치 방식은 인도주의적 보호, 과학적 인구관리를 앞세움으로써, 오히려 이전보다 은밀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원주민들의 멸절을 국가 권력 주도로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었다.

1. 보호

정착민 식민주의 연구의 촉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역사인류학자 패트릭 울프(Patrick Wolfe)에 의하면, 정착민 사회는 본질적으로 원주민의 존재를 지우려는 ‘멸절의 논리’(logic of elimination)를 기초로 구성된다. 원주민들을 멸절시키려는 장기지속적인 작업은 특히 제국/국가 및 공권력 주도로만 진행되지 않고 정착민 사회 각층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경우가 많기에, ‘멸절의 논리’는 더더욱 정착민 사회의 성장 과정에서 사회 조직 전반에 깊이 배어들게 마련이다.¹⁰

10 Wolfe (2006), pp. 387-388, p. 393.

19세기 중엽까지 미국, 호주, 캐나다의 식민팽창 역사는 울프의 통찰에 잘 부합하는 사회정치적 과정을 보여준다. 영제국으로부터의 독립 과정에서부터 연방 구성과 영토체제 수립, 그리고 지속적인 신생주 창출 과정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탄생과 팽창 과정에 끊이지 않는 동력을 제공한 것은 주변부로 계속하여 뻗어 나가는 정착민들의 식민활동이었다. 정착민들은 때로 제국/국가 권력의 기획과 지원에 따라 변경지대로 향하기도 했지만, 엘리트와 부유층이 아직 손대지 못한 값싼 땅을 선점하고자 제국의 팽창에 앞서 원주민 땅에 침투해 들어가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제재를 무시한 채 무법적으로 원주민의 땅에서 사유지를 확보해 나가려는 정착민들의 태도는, 영제국 맥락에서든 미연방 맥락에서든 북미에서 중앙화된 통치 질서를 수립하려는 정치지도자들에게 늘 심각한 고민거리였다.¹¹

미국의 분리 독립이 계기가 되어 영제국이 1780년대 말부터 본격 추진한 호주 식민지 개척은, 특히 죄수들의 유배지로 기획된 만큼 북미에서와 달리 위로부터의 철저한 통제 속에 질서정연한 식민지 사회 수립이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광활한 대지에서 양과 소의 방목, 농경 등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식민지의 상황은 곧 급변했다.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영농에 손대려는 죄수들, 또 이들을 고용하여 대농장, 목장을 운영하려는 자유 신분 정착민들의 거센 물결 속에, 오래지 않아 북미에서와 비슷한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식민팽창이 호주 남동부에서도 펼쳐지기 시작했다. 영제국이 처음 수립한 식민지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에 이어 인근 태즈매니아(Tasmania)섬에 새로 식민지가 수립되고

11 Gregory Ablavsky (2021), *Federal Ground: Governing Property and Violence in the First U.S. Territor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hristian Fritz (2008), *American Sovereigns: The People and America's Constitutional Tradition before the Civil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vid Andrew Nichols (2008), *Red Gentlemen & White Savages: Indians, Federalists, and the Search for Order on the American Frontier*, Charlottesville, VA: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김성엽(2020), 「북미 대륙사와 정착민 식민주의에 비추어 재해석한 미국 연방제의 기원」, 『서양사론』 146, pp. 8-49.

얼마 후 뉴사우스웨일스 남서부 땅이 빅토리아(Victoria)라는 별개의 식민지로 분리해 나가는 등 호주 땅에서의 영국계 식민팽창이 미연방의 신생주 추가 과정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 것은,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앙의 기획 때문이라기보다 주변부 정착민들의 자발적 식민활동에 이끌려서였다.¹²

캐나다의 식민팽창, 특히 현재 캐나다의 중부와 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의 팽창은 상대적으로 늦게, 19세기 후반부터 국가권력 주도로 일어났다. 그러나 여기서도 정착민 식민팽창의 동력은 18세기 말부터 이미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캐나다가 될 땅에서는 프랑스 제국, 영제국, 여러 문화권의 상인들, 복수의 원주민 정치체들이 서로 복잡하게 경쟁하고 제휴하며 통치 권력이 분산된 상태가 17세기 초부터 오래도록 지속되어 오고 있었는데, 18세기 중엽 7년 전쟁을 통해 영제국이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면서 동부 퀘벡 지역을 중심으로 영국계 정착민들의 유입이 가속화되었고, 곧이어 미국 독립전쟁기에는 미국이 될 땅의 영국계 식민지민 중 영제국 아래 남기를 원하는 충성파(Loyalists)들이 호주, 서인도제도와 더불어 북부의 캐나다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인구 압력을 가중시켰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으려는 이 정착민들의 움직임은 영제국이 원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하며 토지 수탈을 뒷받침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이런 배경이 궁극적으로 캐나다에서도 미국, 호주와 비슷하게 연방제 구조 속에 식민팽창이 지속되는 체제가 마련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¹³

12 Bain Attwood (2022), *Empire and the Making of Native Title: Sovereignty, Property, and Indigenous Peop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sa Ford (2010), *Settler Sovereignty: Jurisdiction and Indigenous People in America and Australia, 1788-183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tuart Macintyre (2020), *A Concise History of Australia*, 5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enelope Edmonds and Jane Carey (2017), "Australian Settler Colonialism over the Long Nineteenth Century," *The Routledge Handbook of the History of Settler Colonialism* (ed. by Edward Cavanagh and Lorenzo Veracini), London: Routledge, pp. 371-390.

13 Allan Greer (2019), "Settler Colonialism and Beyond," *Journal of the Canadian Historical Association* 30(1), pp. 61-86; John G. Reid and Thomas Peace (2017), "Colonies of

이처럼 중앙정부가 쉽게 통제하지 못하는 정착민들의 공격적인 이주 정착 활동이 19세기 중엽까지 북미와 호주의 식민팽창 과정에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여러 연구들에 의해 상세히 밝혀지면서, 최근에는 이런 연구 성과를 염두에 둔 채 다시 중앙으로 눈을 돌려, 18세기 말~19세기 중엽 제국 통치성의 변천 과정과 그 역사적 유산을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들 또한 활기를 띠고 있다. 리사 포드(Lisa Ford), 로렌 벤톤(Lauren Benton), 앨런 레스터(Alan Lester), 아만다 네슬백(Amanda Nettelbeck) 등에 의하면, 이 시기 영제국 통치 철학의 핵심 개념으로 떠오른 것은 무엇보다 ‘보호’와 ‘인도주의’였다. 기독교적 복음주의의 색채를 짙게 띤 노예제폐지운동이 1807년의 노예무역금지와 1833년의 노예제폐지라는 결실을 맺으면서 인도주의적 제국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한동안 영국 엘리트층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는 점은 이전부터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바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이런 인도주의 논의를 주로 도덕적·종교적 차원에 집중하여 파악하려 한 반면, 최근의 새로운 연구들은 인도주의적 보호 담론이 제국 통치성에, 특히 유럽계 정착민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 정착 식민지들의 실질적인 통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한다.¹⁴

Settlement and Settler Colonialism in Northeastern North America, 1450-1850,” *The Routledge Handbook of the History of Settler Colonialism* (ed. by Edward Cavanagh and Lorenzo Veracini), London: Routledge, pp. 79-94; Laura Ishiguro (2017), “Northwest North America (Canadian West) to 1900,” *The Routledge Handbook of the History of Settler Colonialism* (ed. by Edward Cavanagh and Lorenzo Veracini), London: Routledge, pp. 125-138; Maya Jasanoff (2011), *Liberty’s Exiles: American Loyalists in the Revolutionary World*, New York: Alfred A. Knopf.

- 14 Benton and Ford (2016); Ford (2021); Lester and Dussart (2014); Nettelbeck (2019). 본고의 맥락에서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의 ‘인도주의’적 통치 담론과 제국의 ‘보호’ 담론이 서로 긴밀히 엮인 것으로 취급되지만, 두 개념의 강조점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가령 다음을 보라: Bain Attwood (2017), “Protection Claims: The British, Maori and the Islands of New Zealand, 1800-40,” *Protection and Empire: A Global History* (ed. by Lauren Benton, Adam Clulow and Bain Attwo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53-174.

인도주의적 보호 담론이 단지 복음주의적 노예제폐지운동의 잔영이 아니라 19세기 중엽 북미, 서인도제도,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로 넓게 펼쳐진 영제국의 전반적인 통치 기조 한가운데 있었다는 점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예로서, 1830년대 중엽부터 본격화된 원주민 보호 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운동은 물론 노예제 폐지운동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지만, 직접적 계기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와 태즈메니아(당시에는 Van Diemen's Land라 불렀음)에서 정착민들이 원주민들을 상대로 벌인 충격적인 학살 사건들이었다. 이는 물론 18세기 말부터 지속되어 온 식민주의 폭력의 일부 사례에 불과했지만, 영국에 보도되어 많은 주목을 끌었기에 1835년 영국 의회는 제국 내 원주민들의 상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위원회(Select Committee on Aborigines)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1837년 내놓은 보고서에서 제국 정부가 원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통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국 중심부의 이런 움직임은 민간단체 원주민보호회(Aborigines' Protection Society)의 결성으로도 이어졌지만, 원주민 보호관(Protector of Aborigines)이라는 관직의 신설에서 보여지듯 통치체제의 직접적 재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최근의 연구들은 남아프리카, 인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를 오가며 제국에서 파견한 판무관(commissioner), 원주민 보호관, 식민지 총독을 역임한 조지 아서(George Arthur), 조지 그레이(George Grey) 등 관료들의 활동을 면밀히 추적함으로써, 인도주의적 보호 담론이 제국의 통치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 한다.¹⁵

한편 미국에서도 중앙정부가 원주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엘리트층 사이에서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제기되었다. 영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은 주변부 정착민들이 자행한 식민 폭력이었으며, 이런 분산되고 무질서한 폭력으로부

15 James Heartfield (2011), *The Aborigines' Protection Society: Humanitarian Imperialism in Australia New Zealand, Fiji, Canada, South Africa, and the Congo, 1836-190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Nettelbeck (2019); Lester and Dussart (2014).

터 원주민들을 보호하는일은 중앙권력, 즉 연방정부만이 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 영제국에서처럼 원주민 보호 움직임은 엘리트 층과 고위 정치지도자들의 담론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군정장관(Secretary of War), 원주민담당관(Indian Agent) 등 중앙 직속 관직을 역임하며 일선에서 정착민과 원주민들을 상대한 헨리 낡스(Henry Knox), 티머시 피커링(Timothy Pickering), 벤저민 호킨스(Benjamin Hawkins) 등에 의해 연방의 통치성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¹⁶

19세기 중엽까지의 영제국과 미국의 원주민 보호 담론을 직접 비교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각각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에 비추어 보면 둘 사이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19세기 후반부터 미국과 영제국 치하의 호주, 캐나다에서 원주민 아동을 대상으로 상당히 유사한 동화 정책이 추진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된다.

19세기 중엽까지 영제국과 미국의 원주민 보호 담론은 우선 이를 철저히 중앙권력의 통치성 문제로 설정하는 태도를 공유했다. 정치체 내 다양한 신민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중앙화된 제국/국가 통치의 주된 의의라는 관념은 물론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¹⁷ 그러나 이 시기 영제국과 미국에서는 급속도로 전개되는 폭력적 식민팽창이 통치질서의 붕괴에 대한 엘리트들의 위기감을 증대시킨 가운데,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자국 정착민이므로, 이들을 상대로 위로부터의 통치권을 강화해야만 원주민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에 특히 큰 힘이 실릴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 영제국과 미국 엘리트는 공히, 역사상 대부분의 왕국, 제국이 자의

16 Nichols (2008); Ablavsky (2021); Nicholas Guyatt (2016), *Bind Us Apart: How Enlightened Americans Invented Racial Segreg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87-114.

17 Lauren Benton and Adam Clulow (2017), "Introduction: The Long, Strange History of Protection," *Protection and Empire: A Global History* (ed. by Lauren Benton, Adam Clulow and Bain Attwo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9.

적인 통치를 펼친 반면, 자국은 합리적이고 엄정한 법치를 통해 신민에게 일관된 보호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예외주의적 시각을 견지했다.¹⁸

제국 또는 연방의 통치 아래 뭉으로써 원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은 물론 현실적 근거가 빈약한 것임이 곧 드러났다. 19세기 중엽 식민 팽창이 더욱 가속화되고 정착민들의 인구와 경제력이 강화되면서 제국/연방이 이들을 제어하는 것은 오히려 더욱 어려워졌다. 나아가 제한된 자원과 인력으로 주변부의 충성을 도모하며 안정적으로 제국/연방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결국에는 인도주의적 고려에 앞섰기에, 영제국과 미국 정부는 정착민들과 가급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주들의 주권을 강조하고 정착민들의 서진을 적극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미국에서 1820년대 말부터 남북전쟁 전까지 연방 정치를 거의 줄곧 장악했던 것, 그리고 영제국이 19세기 중엽부터 호주와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 정착민 인구가 헤게모니를 쥔 식민지들이 이른바 “책임정부”(responsible government)라 불리는 상당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게 해 준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⁹

그렇더라도, 인도주의적 보호 움직임이 영제국과 미국의 통치 철학과 기조에 아무 영향을 남기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갈수록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양해지는 영제국과 미연방에서, 노예, 원주민 등 ‘약자’ 집단의 보호는 최고 권력의 몫이라는 주장은 추후에 통치권 중앙화가 실제로 가능해졌을 때, 이를 정당화하는 수사로서 더욱 유용해질 것이었다. 또한 원주민들을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국가 권력이 이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변화를 강요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는 논리로 쉽게 비화될 수 있

18 Benton and Ford (2016); Nettelbeck (2019); Guyatt (2016).

19 Ann Curthoys and Jessie Mitchell (2013), “The Advent of Self-Government, 1840s-90,” *The Cambridge History of Australia, Volume 1: Indigenous and Colonial Australia* (ed. by Alison Bashford and Stuart Macintyre), Victoria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49-169; Alan Taylor (2021), *American Republics: A Continental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783-1850*,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었다.

여기서 공격적인 정착민들의 존재는 ‘보호를 위한 개입/통제’ 논리에 힘을 실어 주는 배경 요소로 작용했다. 원주민들을 가만히 둘 경우 제국/국가의 식민팽창 물결 앞에 그들은 머지 않아 멸절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주민들이 ‘문명화’되어 정착민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만이 그들의 생존을 도모할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물론 정착민들의 계속된 원주민 토지수탈 및 비백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마치 불가항력, 또는 고정된 사회적 조건으로 치부하기에 가능한 논리였다.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가령 원주민들에 대한 정착민들의 폭력과 배제를 비난하면서도, (중하층민 사이에 특히 널리 퍼져 있는) “백인들의 편견”(white prejudice)은 국가 권력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고정된 사회문화적 조건이기에, 아무리 제어하려 한들 결국 정착민들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실제로는 물론 주변부 정착민들의 불만을 달래며 제국/연방의 통치질서를 확립하려는 정치적 선택의 결과였으나, 중앙 엘리트의 이런 담론은 인도주의적 보호론이 결국 원주민들에 대한 ‘문명화’ 강요로 직결될 수 있게 하였다.²⁰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엽까지 영제국과 미국 정치 지도자들의 원주민 보호론에 의하면 원주민들에게 바로 동등한 권리를 주고 백인들과 함께 살게 해서는 결코 갈등과 타락을 피할 수 없고, 이들을 정착민으로부터 분리시켜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관리하에 두며 문명화되도록 이끌어야 비로소 정착민 사회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당대 보호론자들이 널리 공유했던 계몽주의적 인간관과 문명발전 단계론(stadial theory), 나아가 종(species)의 기원과 분화에 대한 자연사(natural history) 이론은, 오랜 세월이 걸쳐 수렵-채집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문명화를 위해 그들의 가정 및 공동체 생활, 풍습, 일상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20 Guyatt (2016), pp. 109-111, 145-158; Nettelbeck (2019); 김성엽(2022), 「기회의 땅: 건국기 차별적 이주의 자유와 미국 인종분리의 기원」, 『미국사연구』 56, pp. 1-54.

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힘을 실어 주었다.²¹

이런 태도를 잘 보여 주는 예로, 미국 건국기 지도자 중 대표적인 인도주의적 보호론자였던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아프리카계 노예들에 비해 북미 원주민들의 문명화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문명화를 위해서는 원주민들이 정주 생활과 서양식 소유 관념, 농경 방식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원주민 사회에서 남성은 주로 수렵과 전투에 전념하고 농경을 비롯한 생산활동은 여성이 전담한다는 당대 많은 정착민 관찰자들의 선입관에 기초하여, 서양식으로 남성이 생산활동을 전담하고 여성은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는 식으로 젠더 질서와 역할분담부터 바꾸어야 원주민들이 경제적으로도, 인구학적으로도 보다 생산적인 문명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진단했다.²²

한편 1830년대 무렵부터 영제국 여러 식민지들의 총독을 역임하며 인도주의적 통치를 도입하려 노력했던 조지 그레이는 1840년 영국 의회에 제출한 긴 보고서를 통해 호주 원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 방안을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원주민들을 영국법의 보호를 받는 신민으로 격상시켜야 함을 역설했다. 이는 당시 식민지들의 보편적 관행과 달리 보통법 법원들이 원주민의 증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등 그들을 법적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원주민이 정착민에게 상해를 끼친 경우는 물론 원주민 서로 간의 분쟁과 상해에 대해서도 영국 법으로 다스려야 함을 의미했다. 영국식 법치를 문명화된 사회질서의 근간으로 보는 그레이의 시각에서, 원주민들이 제국 내에서 문명인으로 기능하며 공존할 수 있으려면 영국법을 따르며 결혼문화에서부터 사회정치 질서까지 모두 뜯어고쳐야 했다.

21 Smithers (2017), pp. 30-43; Guyatt (2016), pp. 115-132.

22 Thomas Jefferson (1785; 1832),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Boston: Lilly and Wait, pp. 62-67. <https://tile.loc.gov/storage-services/service/gdc/lhcbcb/04902/04902.pdf> (접속일: 2023.2.26.)

여기서 이후의 논의에 비추어 특히 주목할 만한 바는, 제국/식민지 정부가 원주민들을 스스로의 “미개하고 야만적인 법”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그레이의 주장이다. 관련하여, 그레이는 특히 원주민 사회에서도 가령 어린 나이에 강제로 혼인하여 남편의 폭정에 시달려 온 젊은 여성들이 문명화를 수용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남성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원주민 사회 및 가정이 내부적으로 불평등하고 폭압적이기에 국가권력이 (가급적 상시 출동 대기 중인 강력한 기병대를 필두로) 개입하여 원주민 중 약자를 구제해 주어야 한다는 식의 논변은, 그레이뿐 아니라 당대 미국과 영제국의 인도주의적 보호론자들이 널리 공유한 태도의 산물이었다.²³ 문명화와 보호, 통치성에 대한 이런 사고가 후대에 이어져, 국가 차원의 보호를 표방하며 원주민 아동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내는 정책 형성에 일조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중앙권력을 앞세워 원주민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변화를 강요하려는 태도는 두말할 나위 없이, 처음부터 새로운 종류의 국가 폭력으로 비화할 소지가 다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퍼슨, 그레이 등이 아마도 진심으로 이런 문명화 강요를 인도주의적 보호라고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정책을 통해 식민주의의 물질 자체는 거스르지 않더라도 적어도 식민 폭력의 파괴적 여파는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19세기 초부터 중앙화된 제국 통치와 주변부 정착민 식민주의가 원주민들을 대하는 방식을 두고 서로 긴장관계를 지속했지만, 바로 두 힘이 계속 갈등하며 절충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거쳤기에 이후 원주민들 상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미시적인 국가 주도의 식민 억압 기제가 발전해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도주의적 보호를 앞세운 중

23 George Grey (1840), *A Report upon the Best Means of Promoting the Civilization of the Aboriginal Inhabitants of Australia*, reprinted in George Grey (1841), *Journals of Two Expeditions of Discovery in North-West and Western Australia*, London: T. and W. Boone. <https://gutenberg.net.au/ebooks/e00055.html> (접속일: 2023.2.26.).

양화된 제국 통치는 표면적으로는 폭력적인 주변부 정착민 식민주의와 사회정치적으로 충돌하며 이를 억제하려는 데 주력했지만, 동시에 정착민 폭력 및 원주민 멸절을 거스르기 힘든 사회적 현실이자 ‘자연적’ 역사 발전으로 치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원주민 상대로 새로운 종류의 강압적 국가 폭력을 합리화하려 했기 때문이다.

원주민에 대한 정착민 국가의 이런 접근이 체계화되면서 아동 교육이 원주민 정책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지만, 제퍼슨, 그레이 등 인도주의적 보호론자들 중 상당수는 19세기 전반부터 이미 원주민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북미, 호주에서 공히 선교사, 교회, 종교단체에 의한 원주민 교육은 일찍부터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미국과 영제국의 인도주의적 보호론자들은 개별적인 개종과 교화에 머무르지 않고, 확대된 국가/제국 통치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원주민 교육 제도를 구상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물론 19세기 중엽까지 이런 기획들은 대체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원주민 교육의 대의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국가 차원의 충분한 재정적·인적 지원을 보장하는 데 대해서는 미온적인 경우가 많았고, 또 정착민 중 다수는 교육받은 원주민 엘리트들이 식민지의 사회질서, 인종질서를 위협하리라는 우려 속에 원주민 교육 자체를 불편하게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런 장애 요소를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보호론자들은 점차 원주민 학교를 정착민들의 주거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시키고, 엘리트 양성보다 순종적 노동자 양성에 치중한 교육을 제공하며, 원주민 학생들이 재학 중에 이미 노동을 통해 학교 재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식으로 학교 운영 방식을 조정해 나갔다.²⁴ 주변부 정착민 식민주의와 인도주의적 제국 통치 사이의 절충을 통해 마련된 원주민 보호 및 교육의 이런 방향성은 19세기 중엽까지는 아직 몇몇 작은 실험에 그쳤으나, 19세기 말부

24 Woolford (2015), pp. 52-53; Rebecca Swartz (2019), *Education and Empire: Children, Race and Humanitarianism in the British Settler Colonies, 1833-1880*, Cham: Palgrave Macmillan, p. 35, pp. 60-70, 76-78, 115-119, 197-198.

터는 원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실현되었다.

2. 동화

19세기 후반은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공히 이전에 비해 현격히 중앙화된 국가체제가 자리 잡은 시기였다. 미국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이전의 공화국 연방제가 그대로 지속되었으나, 1860년대의 남북전쟁과 이후의 재건 과정을 거치며 비로소 연방 정부가 국가 기능과 권한의 상당 부분을 독점하는 중앙화된 체제로 거듭났다.²⁵ 한편 앞서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인구와 경제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제국의 주변부로 통치되는 데 대한 정착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영제국 정부는 이에 호응하여 19세기 중엽부터 정착민 식민지 의회들에 하나둘 ‘책임 정부’ 지위를 부여하며 자치권 확대를 허용하였다. 식민지 단위의 이런 통치권 확립에 힘입어, 캐나다와 호주의 식민지 정부들은 상호 정치적, 경제적 결속을 다지며 궁극적으로 연합을 구성함으로써 국가권력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²⁶

세 국가 모두에서 국가체제 정비는 대체로 국가가 강화된 통치력으로 정착민들의 요구에 더욱 적극 부응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는 이전의 분산된 식민팽창과 달리, 원주민과의 관계를 국가권력이 보다 확고히 독점하여 수행하는 체제로의 변화를 의미했다. 미국에서는 1860년대부터 1890년 무렵까지 한 세대 동안 연방군이 중서부 대평원의 여러 원주민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며 그들의 입지를 극적으로 축소시켰고, 동시에 국가의 적극 지원하에 대륙횡단 철도를 부설하고 중서부에 정착하려는 (백인) 가정 누구

25 Steven Hahn (2016), *A Nation Without Borders: The United States and Its World, 1830-1910*, New York: Penguin; Gary Gerstle (2017), *Liberty and Coercion: The Paradox of American Government from the Founding to the Pres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Curthoys and Mitchell (2013); Macintyre (2020), pp. 99-100; Ishiguro (2017).

에게나 사실상 무상으로 농지를 불하하는 정책을 통해 정착민들의 유입을 독려했다.²⁷

캐나다에서도 1860년대부터 새로 구성된 연방 차원에서 일원화된 토지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가가 (원주민들로부터) 토지를 획득하여 정착민들에게 불하하는 식으로 식민팽창 방식을 중앙화하였다. 더불어 1870년대부터 경찰이지만 연방 정규군에 해당하는 기병대(Mounted Police)를 조직하여 원주민들의 저항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1880년대에 개통된 대륙횡단 철도를 통해 정착민들의 서부 이주를 용이하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서부의 원주민들을 압박하여 일련의 불평등한 조약을 맺으며 대규모의 토지를 일거에 획득해 나갔다.²⁸

호주는 1901년에 비로소 연방을 구성하였기에 연방 차원의 일원화된 영토, 원주민 정책은 북미보다 늦게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19세기 후반 들어 각 식민지 단위로 국가 기능을 강화하고 또 정책 향방에 대해 서로 활발히 참고하고 협조하며, 전반적으로 한층 중앙화된 방식으로 원주민들을 상대했다. 상대적으로 늦게 수립된 남호주(South Australia), 서호주(Western Australia), 퀸즈랜드(Queensland), 북부영토(Northern Territory)에서는 특히 이 시기에 이르러 급속한 식민팽창이 진행되었는데, 19세기 전반과 같은 변경지대의 무질서한 폭력도 물론 끊이지 않았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 공권력이 영토 관리, 원주민-정착민 관계에 보다 깊이 관여하며 질서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확연했다.²⁹

원주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새로운 정책은 이런 맥락에서 탄생했다. 북미에서의 새로운 정책 기조는 직접적으로는 미국 연방군 장교

27 Hahn (2016), pp. 362-400.

28 Ishiguro (2017); Adam J. Barker, Toby Rollo, and Emma Battell Lowman (2017), "Settler colonialism and the consolidation of Canada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Routledge Handbook of the History of Settler Colonialism* (ed. by Edward Cavanagh and Lorenzo Veracini), London: Routledge, pp. 153-166.

29 Curthoys and Mitchell (2013); Edmonds and Carey (2017).

리처드 헨리 플랫(Richard Henry Platt)의 실험에 의해 촉발되었다. 플랫은 연방군 소속으로 중서부 원주민들과의 무력 대치에 수년간 참여하던 중 포로들을 분류, 수용, 관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 기회에 이들에게 문명화 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연방군이 제안을 받아들이자, 1875년 플랫은 일군의 젊은 원주민 포로를 중서부에서 플로리다의 한 요새(Fort Marion)로 이송시켜 이들에게 문명화 교육을 실시했다. 3년이 지나 포로/학생들이 석방된 후 대다수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플랫은 이 중 몇 명에게 미국 동부에 남아 고등교육을 받도록 설득했고, 다른 어떤 학교도 학생들을 받아주지 않으려 하는 가운데, 버지니아주의 한 흑인 대상 학교(Hampton Agricultural School for Negroes) 안에서 비로소 원주민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 경험에 힘입어 플랫은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원주민들을 효과적으로 문명화할 수 있다고 자신했고, 연방정부가 그의 계획을 승인해 줌으로써 1879년 펜실베이니아주 서부 칼라일(Carlisle)의 한 폐기된 군사 시설에 원주민을 위한 학교를 개설할 수 있었다. 이로써 북미 최초로, 국가의 공식적인 관할, 지원하에 운영되는 원주민 학교가 탄생하였다.³⁰

플랫 자신이 학생들을 문명화 교육의 모범적인 예시로 내세우며 널리 홍보한 덕이기도 했겠지만, 그의 실험은 강화된 국가권력이 인도주의적 사회개혁, 진보에 사용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에서는 칼라일 학교가 개설된 같은 해 백인 여성들로 구성된 여성전국원주민협회(Women's National Indian Association)가 결성되었고, 비슷한 여러 민간단체들이 “원주민의 동지”라는 이름으로 뉴욕주 모호크 호수(Lake Mohonk)에 모여 원주민 관련 보고와 제안을 활발히 주고받는 회담이 1883년부터 정례화되었다. 이 단체들은 원주민들의 현실과 미래 전반에 관

30 Jacqueline Fear-Segal (2007), *White Man's Club: Schools, Race, and the Struggle of Indian Accultur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pp. 159-205.

심을 두었지만 특히 원주민 교육을 확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주력했으며, 교회 등 민간이 운영하는 원주민 학교에 대한 지원보다는 주로 국가가 주도하는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원주민 교육을 지원하려 노력했다. 비록 미국 사회 전체는 아니고 주로 교육받은 동부 백인 중간층 및 일부 연방 관료들 사이에서지만, 이런 열띤 호응은 플랫폼의 모델이 국가 정책으로 확대되어 전국에 수백 개의 원주민 학교가 개설되게 하는 데 기여했다.³¹

캐나다에서는 19세기 말 이후에도 이전처럼 선교사,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들에서 원주민 교육을 계속 담당하였는데, 이는 특히 원주민들이 많은 서부 지역에 미국만큼 아직 국가권력이 잘 미치지 못했으며, 전반적으로 국가가 직접 학교를 여럿 개설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신, 캐나다 정부에서는 교회/종교인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학교 교사와 운영진이 국가 원주민 정책의 편제에 귀속되어 중앙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원주민에 대한 교육 내용과 방식을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일원화할 수 있었다. 비록 민간을 통한 간접적인 교육 체제지만, 미국에서처럼 이제는 모든 원주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교육 정책으로 확대한 것이었다.³²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히, 국가 주도의 새로운 교육 체제가 표방한 주된 목적은 원주민들을 문명화함으로써 그들이 급속도로 근대화, 산업화되고 있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19세기 말부터의 원주민 교육 정책은 19세기 중엽까지 일부 인도주의적 엘리트 사이에서 논의, 시도되었던 문명화 사업을 비로소 강화된 국가 역량을 활용해 실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앞서 보았듯 제퍼슨, 그레이 등은 문명화를 통해 원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는데, 19세기 말부터의 원주민 교육에서 국가권력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원주민들을 근대화의 충격으로부터

31 Jacobs (2009), pp. 29-31.

32 Woolford (2015), pp. 69-70.

보호하며 적응을 돕겠다는 취지에서였다. 미국/캐나다의 “원주민 문제”(the Indian problem/question)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자신들이 그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인도주의자들의 태도는, 원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정착민 사회와의 건설적 관계를 모색하도록 지원하거나 원주민에 대한 정착민의 폭력과 수탈을 제어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그들을 정착민 국가권력의 ‘보호’ 아래 두며 생존 가능하도록 변화시키겠다는 이전의 엘리트주의적, 서양중심주의적 사고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전 시기와의 차이 또한 현격했다. 19세기 말부터의 교육 체제는 강화된 국가권력, 나아가 근대적 통치 기제들을 활용하여 원주민들의 일상과 습관에 훨씬 속속들이 개입하여 ‘문명화’의 기치 아래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 했다. 이 점에서 플랫폼이 촉발한 새로운 국가 주도 교육 체제는 이전의 교육과는 사뭇 다른 ‘근대적’인 교육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일찍이 제퍼슨 등은 원주민들이 부족/네이션 단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며 농경, 가부장제, 법치 등 문명의 요소들을 점차 수용해 나가는 청사진을 그렸고, 잘 알려졌듯 실제로 미국 남동부의 체로키(Cherokee), 크릭(Creek), 족타우(Choctaw), 치커소우(Chickasaw) 등이 이런 모델을 상당 정도 따랐다면, 근대적 원주민 교육 체제는 교육받은 원주민들이 공동체로 돌아가기보다 개인 단위로 주류 사회에 녹아들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³³ 그렇기에 더더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원주민 학생 한 명 한 명의 몸가짐에서부터 마음가짐까지 철저히 개조하려 노력한 것이었다. 이 점에서 19세기 말부터의 원주민 교육 체제는 여전히 ‘문명화’를 명분으로 삼되, 철저히 국가가 정한 방식에 따라 원주민 개개인을 정착민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로 ‘동화’시키는 데 방점을 둔 것이었다.

이런 변화를 잘 보여 주는 예로, 1825년 수립된 족타우 아카데미의 부침을 들 수 있다. 진술했듯 족타우는 19세기 초에 미국의 ‘문명화’ 요구를

— www.kci.go.kr

33 Guyatt (2016), pp. 225–246; Firpo and Jacobs (2018).

수용한 남동부 네이션 중 하나였다. 그 일환으로 족타우 네이션은 연방정부와의 토지 양도 조약을 맺으면서, 자신들의 영토 안에 연방정부의 재정적, 인적 지원을 받는 서양식 학교가 수립될 것을 요구하였다. 서양 문명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원주민의 가치관, 세계관과 접목시킬 줄 아는 젊은 지도자층을 양성함으로써, 유럽계 정착민들에게 둘러싸인 북미 공간에서 족타우 네이션의 집단적 생존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실제로 족타우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은 워시 태헌(Wash Tahern) 같은 젊은 지도자들은 족타우 지적 전통이 깊이 배어 있는 방식으로 서양 문명을 독자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으며, 서양의 법리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의 토지수탈 정책을 비판하며 미국 식민팽창의 자가당착적 모순을 꼬집기도 하였다. 족타우 아카데미는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연방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운영에 점차 어려움을 겪었고, 급기야 1898년에는 남동부 ‘문명화된 다섯 개 네이션들’의 남은 영토마저 해체하는 커티스법(Curtis Act)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 조치되었다. 족타우 아동들도 서양식 교육을 받으려면 이제는 오로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학교에 의존해야만 하게 되었다. 원주민 후속 세대의 미래를 철저히 정착민 국가의 일률적 동화 정책 안에 가두려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원주민의 주체적인 서양문명 수용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다.³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충분히 근대적이지 못한’ 인구집단의 아동들을 근대적 개인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발상은 물론, 원주민 아동들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유럽에서 교육 및 양육에 대한 이런 접근은 산업화의 심화와 더불어, 노동자층 아동을 대상으로 19세기 초부터 끊임없이 실험되고 시도되었다. 영국의 경우, 엘리트층은 근대 초의 상업화, 토지 사유화 시기부터 이미 노동자층 아동을 향해 미래의 빈민, 부랑인이라는 의

34 Christina Snyder (2017), “The Rise and Fall and Rise of Civilizations: Indian Intellectual Culture during the Removal Era,”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104(2), pp. 386-409.

심에 찬 시선을 보냈다. 이런 사회적 인식에 힘입어, 고아 및 빈민 아동들, 또는 노동자층 아동들 전반에 대해서는 특히 이른 나이부터 생산적인 노동 습관과 규율을 체득하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둔 강압적인 ‘직업’ 교육이 정당화되곤 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는 노동계급의 정치력이 성장한 한편 사회계층 불문하고 자립적 핵가족 재생산을 중시하고 부모의 독립적 양육권을 신성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노동자층 아동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강압적 공교육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었고 20세기 초에는 점차 모습을 감추었다.³⁵

이런 추이는 영국계 정착민 사회들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어, 19세기 말에 이르면 보편적 권리로서의 초등 공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는 수용하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 교육 강제는 점차 지양하는 경향이 확산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백인 아동에 국한된 이야기였다.³⁶ 양육 및 교육에 있어 가정과 부모의 자율성이 점차 강조되던 바로 그 시기에, 원주민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공교육이 오히려 유례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행해지기 시작했다.

최근의 여러 연구들은 북미의 원주민 기숙 학교들에서 자행된 일상적 폭력의 양상을 매우 상세하고 다층적으로 재구성해 보여 주고 있는데, 연구들이 강조하는 바는 크게 미시적 통제, (재)주변화, 강압이라는 세 측면으로 집약해 볼 수 있다.

우선 기숙 학교들에서는 강화된 국가권력과 통제 기제를 적극 활용하여, 원주민 아동들의 몸과 마음에 깊숙이 침투하여 근대인으로 재탄생시키려 노력했다. 이제는 익히 알려져 있듯 학교 교사와 운영자들은 아동들이 원주민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노래, 춤, 의식을 행하지 못하게 규제하곤 했으며, 서양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근대적’ 자기 규제를 내면화하도

35 Swartz (2019), p. 74, pp. 294-304; 김혜주(2022), 「19세기 영국 백인반대 부모의 시민됨과 “매독 아이”」, 『인문논총』 79(4), pp. 7-36.

36 Swartz (2019), pp. 45-46; Jacobs (2009), pp. 57-63; Firpo and Jacobs (2018), p. 539.

록 압박하였다. 미국에서는 남성 관료 및 교사와 더불어 개혁주의적인 백인 여성들이 일선에서 학교 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학생들이 원주민들의 ‘야만적인’ 물질문화와 주거방식, 성생활, 공동체 생활에서 탈피하도록 강요하고, 특히 원주민 여아들이 미래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근대적 위생/보건 습관과 성적 순결 의식, 서양식 가족주의를 체득하게 하려 했다.³⁷

미국과 캐나다의 원주민 기숙 학교들은 아이들이 근대 사회에서 자립할 역량을 키운다는 취지를 내세워, 일반 학교에서와는 사뭇 다른 직업 교육을 실시했다. 남아들은 주로 지역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저임금 단순노동을, 여아들은 가정부나 보모 역할을 염두에 둔 가사노동을 배우도록 강요받았다. 나아가 ‘실습’을 시킨다는 명목하에 학생들을 인근 농장과 백인 가정 등에 파견하여 일을 시키고, 대가로 받은 임금은 학교가 챙겨 운영비로 사용하는 일 또한 빈번했다.³⁸ 이런 정책의 발상은 흑인들을 대상으로 한 당대 미국 주류 사회의 교육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열등한 상태에 머물러 온 인종집단이 근대적 개인으로 거듭나 산업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열등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순수히 받아들인 후 개인의 노력으로 차츰 지위 상승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⁹ 그러나 근대 서양 사회, 특히 정착민 사회의 구조화된 인종 위계를 괘시한 이런 허구적인 교육관은, 흑인과 마찬가지로 원주민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영구적으로 저임금 직종, 사회 주변부에 머무르게 하는 효과를 낳을 뿐이었다. 가속화된 식민팽창 속에 이미 주변으로 몰리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동화 교육은 주변화된 공동체의 일원에서 주변화된 개인으로의 ‘재주변화’를 의미했

37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Canada (2015), *Final Report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Canada, Volume One, Summary: Honouring the Truth, Reconciling for the Future*, 2nd printing ed., Toronto: James Lorimer & Company Ltd; Jacobs (2009), pp. 42-43, 72-74; Woolford (2015), pp. 140-144, 166-173, 184-196; Smithers (2017), pp. 220-222; Fear-Seagal (2007), pp. 206-230.

38 Woolford (2015), pp. 66, pp. 154-157; Jacobs (2009), pp. 81-82, 329-370.

39 Smithers (2017), pp. 234-235; Jacobs (2009), pp. 75-76.

다.⁴⁰

원주민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 관료들은 한편으로는 원주민 가정과 아동에 대한 인도주의적 처우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 학교들로 하여금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하면서도 계속하여 상당수의 원주민 아동을 유치하도록 압박하였다. 그렇기에 미국과 캐나다의 원주민 교육 정책은 겉으로는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을 기숙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방하였지만, 수많은 증언과 연구들이 말해주듯, 실제로는 일선 담당자들이 갖은 회유와 압박, 기만을 동원하여 원주민 아동들을 반강제적으로 학교로 끌고 오도록 종용하는 체제였다. 무엇보다 원주민 공동체들은 아이를 내놓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리라는 협박을 받았으며, 19세기 중엽 이후의 강화된 국가 주도 식민폭력 앞에 갈수록 입지가 줄고 빈곤과 소외의 나락에 빠져들고 있던 원주민 공동체들은 많은 경우 이런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⁴¹

이처럼 식민 권력을 등에 업고 원주민 부모 및 공동체의 저항을 무력화한 바탕 위에 펼쳐진 정책이기에, 기숙학교 운영자들은 문명화의 기치 아래 학생들과 부모 사이의 왕래와 교신을 극도로 제한하며, 심지어 학교의 부주의로 학생들이 사망하더라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등,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기숙 학교들에서 공히 학생들에 대한 성 착취와 가혹행위가 빈번히 자행되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여러 아이들이 사망하곤 했는데, 이는 원주민들이 살아온 방식을 무시한 채 아동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문명인으로서 자신들이 판단하겠다는 교사와 운영자들의 오만한 태도, 그리고 이들이 아동들 대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뒷받침한 국가 정책 및 제도가 배태한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할 수

40 Woolford (2015), p. 66, 157; Jacobs (2009), pp. 329-370.

41 Woolford (2015), pp. 71-76, p. 86, pp. 126-127, 247-248; Firpo and Jacobs (2018), pp. 548-549; Barker, Rollo, and Lowman (2017), p. 162; 오영인 (2021), 「20세기 전환기 미국 원주민 동화교육과 새로운 시민정체성을 찾아서」, 『동국사학』 72, 369-405.

있다.⁴²

같은 시기에 호주에서도 북미에서와 유사한 국가 차원의 원주민 아동 교육 정책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단 전술했듯 연방이 구성된 1901년 이전까지는 모든 정책이 주 단위로 추진되었는데, 비록 주 단위지만 19세기 중엽부터 하나둘 영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상당 정도 이양받은 데 힘입어, 주 정부들은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을 확장하며 원주민에 대한 정책도 중앙화하기 시작했다. 가령 빅토리아주의 1869년 원주민 보호관리법은 주 정부가 원주민들의 보호자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일환으로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원주민 아동들’을 보육시설 또는 실업 학교로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제대로 돌봄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주 정부의 소관이었기에, 정부 관료들은 자의적으로 원주민 아동들을 얼마든지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강제로 북미 기숙학교와 유사한 기관에 보낼 수 있었다.⁴³ 북미에서처럼 원주민 아동들은 장래에 백인보다 열등한 직종에 종사하게 되리라는 기대 하에 주로 저임금 노동을 위한 직업 교육을 받았다. 나아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대개 아동들을 3~5년 정도 부모로부터 떨어진 기숙학교에 보낸 반면, 호주에서는 1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조차 부모로부터 영구적으로 분리하여 마치 고아처럼 취급하며 정부의 교육기관에 일임하였다.⁴⁴

백인 가정으로의 입양에 중점을 두는 호주의 독특한 원주민 아동 정책 역시 같은 맥락에서 탄생하였다. 정부에 의한 강제 입양 정책은 주로 19세기 중엽 이후 새로 탄생했거나 개발이 본격화된 주들, 즉 퀸즈랜드, 서호주, 북부영토(Northern Territory)에서 먼저 실험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정책을 촉발한 것은 백인과 원주민 사이 혼혈 아동의 급증이었다. 이는 변방 지역에 한시적으로 노동을 하기 위해 드나드는 백인 남성이 많아지면서 원주민 여

42 Woolford (2015), pp. 243-244; Barker, Rollo, and Lowman (2017), p. 163.

43 Smithers (2017), pp. 254-258.

44 Jacobs (2009), pp. 33-39, p. 81, 173.

성들과의 성관계가 잦아진 결과로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대개 생부와 의 접촉 없이 원주민 사회에서 키워졌다.⁴⁵

원주민 공동체들에서는 별다른 거부감 없이 아이들을 다른 원주민 아동과 함께 취급한 것으로 보이나, 정착민 사회에서는 증가하는 혼혈 원주민 아동의 존재를 문제시하였다. 표면적인 이유는 원주민 미혼모 아래 자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결국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적응자가 되리라는 염려였다. 물론 이는 많은 경우 모계 중심이며 공동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아이들을 양육하는 원주민들의 가정 문화를 무시한 채, 순전히 서양 가부장주의의 견지에서 상황을 바라본 결과였다. 더 근원적으로, 혼혈 원주민들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염려의 근저에는 이들의 존재 자체가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명확한 인종질서에 위협이 되리라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불안심리는 식민팽창 과정 내내 원주민들과 계속하여 가까이 접촉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존재를 애써 부정하려는 정착민 사회 특유의 내적 모순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⁶

퀸즈랜드, 서호주, 북부영토 등의 주 정부들은 이런 사회적 불안감에 응하여, 혼혈 원주민 아동들이 정착민 사회에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정책들을 곧바로 내놓기 시작했다. 우선 앞서 본 것처럼 원주민들에 대한 주 정부의 전반적인 관할권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시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 분리할 수 있게 했는데, 일선 관료들은 이 정책이 쥐어 준 무소불위의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사회적 인식을 적극 반영하여, 혼혈 원주민 아동들은 특히 별다른 사유 없이도 고아원, 소년원, 기숙학교 등에 보내지도록 조치하곤 하였다.⁴⁷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혼혈 증가세가 멈추지 않자, 주 정

45 Robert Manne (2004), "Aboriginal Child Removal and the Question of Genocide, 1900-1940," *Genocide and Settler Society: Frontier Violence and Stolen Indigenous Children in Australian History* (ed. by Moses A. Dirk), New York: Berghahn Books, pp. 217-243.

46 Jacobs (2009), pp. 115-118, 129; Smithers (2017), p. 139; Manne (2004), pp. 227-228.

47 Smithers (2017), pp. 254-256; Manne (2004), p. 221.

부들은 아예 원주민 혼혈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중간 카스트”(Half-Caste)법들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이 법들의 기본 골자는 원주민 혼혈 아동에 대한 양육, 관리 책임을 생모가 아닌 국가, 구체적으로는 주 정부의 원주민 보호관이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앞서 본 바처럼 인종질서 유지에 대한 정착민 사회의 깊은 불안감과 서양식 가부장질서를 문명의 초석으로 보는 관념이 결합하여, 원주민들이 부모로서의 자질을 부족하다는 태도가 정착민들과 관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기에 가능한 정책이었다.

정책 입안자들은 특히 혼혈아를 낳은 원주민 여성들이 것처럼 타지 남성과의 사이에서 혼외 아이를 가지게 된 것 자체가 그들의 성적 문란함을 입증하며, 그렇기에 그들을 부모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북미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정착민 사회의 서양중심주의적 관념은, 원주민 아동을 생부모에게 그대로 맡겨둘 경우 야만성의 대물림을 끊지 못하리라는 위기의식에 불을 지폈다. 인도주의적 보호론자들은 특히 여아들이 생모가 가진 여러 의미에서의 ‘불결함,’ 즉 위생과 보건에 대한 무감각, 성적 문란함, 도덕적 해이를 물려받고 또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악순환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며, 원주민 여아들이 문명화된 여성성, 즉 순결함과 청결, 가족주의의 미덕을 배우게 하려면 국가가 양육을 대신하는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⁴⁸ 국가의 관리는 또한 원주민 여성들이 흑인, 멜라네시아인 등 다른 ‘열등한’ 인종과 성관계를 가져 더욱 문제적인 혼혈인을 양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간주되었다.⁴⁹

이처럼 혼혈 원주민의 존재를 특히 문제시하고, 원주민 부모의 양육 능력을 폄하하며, 국가가 갈수록 원주민 ‘보호’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경향 속에서, 20세기 전환기 무렵부터 원주민 혼혈아들을 백인 가정에 입양시키는 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호주의 인도주의적

48 Jacobs (2009), pp. 111-119, 121-127, p. 131, pp. 137-148; Smithers (2017), p. 212, 317; Manne (2004), p. 223.

49 Smithers (2017), p. 317.

보호론자와 원주민 정책 관료들은 원주민 여성의 모성을 부정하는 정확히 같은 논리로, 문명의 담지자로서 백인 가정, 특히 백인 여성의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런 사고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혼혈 원주민 아동을 문명인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상적인’ 백인 정착민 양부모의 보살핌 아래 두는 것이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다. 원주민 아동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맡김으로써 보육원 및 기숙학교 운영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도 물론 주요한 고려 사항이었다.⁵⁰

그러나 정착민 국가의 시각에서 가장 ‘이상’적인 이 해결책조차 그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민간’에 맡겨진 많은 아동들은 실상 양부모가 있는 가정에 입양된 것이 아니라 백인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운영하는 비공식적인 보육원에 여러 명씩 보내졌으며, 또 가정으로 ‘입양’된 경우에도 실은 하인이나 농가의 일손을 필요로 하는 정착민 가정에 보내진 경우가 많았다. 호주는 미국, 캐나다와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기숙 학교에 원주민 아동들을 보내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기록이나 통계가 남아 있지 않으나, 생존자들로부터 후손에게 전해진 구술 역사, 그리고 연구자들이 밝혀낸 여러 개별 사례들은 원주민 아동을 백인 가정에 입양시켜 문명인으로 키워낸다는 정책 기조가 허울뿐이었음을 말해 준다. 북미에서와 마찬가지로, 호주의 원주민 동화 정책에서도 결국 주안점은 원주민 아동들을 공동체로부터 강제로 분리해 내어 정착민 사회의 주변부로 흩어 버리는 데 있었던 것이다.⁵¹

3. 생명

원주민들의 동화는 18세기 말부터 이미 일부 인도주의적 보호론자들

50 Manne (2004), pp. 220-225; Jacobs (2009), pp. 38-39, 426-427.

51 Jacobs (2009), pp. 335-341.

사이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19세기 중엽까지는 정착민 사회에서 철저히 주변적이고 심지어 이단적인 사고로 치부되었다. 식민지 사회가 성장할수록 정착민들은 백인과 비백인 사이의 통혼 또는 성관계를 금기시하고 혐오하는 태도를 키웠으며, 같은 선상에서 어떤 맥락에서든 원주민과 백인이 가까이 어울리는 데 대해 불편하게 바라봤다. 이런 인종적 태도는 유럽에서 건너온 지적·문화적 배경과도 관계가 있지만, 정착민 사회가 형성되면서 두드러지는 경향 또한 확인했다. 간단히 말해서,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며 유기적인 사회질서를 만들어 나가려는 과정에서, 백인이라는 공통분모는 정착민 사회에서 특히 문화적 유대의 기초로서 중요하게 작용하곤 했다. 더구나 지역 단위로 정착민 중심의 사회가 안착된 후에도 끊임없이 인구 이동이 일어나면서 원주민과 더불어 많은 경우 비유럽계 노예, 계약노동자, 이주민들의 존재가 정착민들이 구축한 사회질서를 위협했기에, 정착민들은 단지 국가 차원에서가 아니라 풀뿌리 사회조직의 차원에서부터 인종을 경계로 하여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는 일에 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곤 했다. 또한 정착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그들과의 문화적 거리를 부각시키며 지속적으로 정착의 당위성을 강변해 왔기에, 정착민들은 특히 문명과 야만의 대비를 인종적 차이와 등치시키며 백인성이 문명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을 키웠다.⁵²

19세기 중엽부터 확산된 과학적 인종주의 담론은 정착민 사회들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다만 새로운 인종적 태도를 양산했다기보다 정착민들이 이미 상당 정도 공유하고 있던 관념에 새로운 수사, 지식으로서의 권위를 덧붙여 주며 뒷받침한 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몇 개의 서로 다른 종에서 기원했다는 다원발생설(polygenesis)은 백인과 비백인의 성관계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라는 생각에 더욱

52 Marilyn Lake and Henry Reynolds (2008), *Drawing the Global Colour Line: White Men's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hallenge of Racial Equ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힘을 실어 주었다. 기독교 교리와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의 연장선에서 인류 모두가 동일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일원발생설(monogenesis)을 주장하는 측 또한 훨씬 소수나마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존속하였는데, 이들은 물론 인종 간 교혼 및 혼합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취하곤 했다. 그러나 일원발생설을 따르더라도, 백인과 비백인 사이의 지적·문화적·신체적 차이는 장구한 역사를 통해 누적된, 돌이키기 힘든 괴리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런 시각에서는 특히, 인종간 성관계 및 혼합이 열등한 집단의 개선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월한 집단(백인)의 지적·신체적·도덕적 퇴화(degeneration)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곤 했다.⁵³

19세기 말부터 북미와 호주에서 인도주의적 원주민 동화 정책을 추구한 엘리트층 역시 인종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졌으나, 정착민 사회 전반에 비하면 일원발생설에 입각한 인종적 개선 가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린 태도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에 그들은 원주민들이 충분히 동화될 수 있다는 신념하에, 정부가 포괄적인 교육 또는 입양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정착민 사회 주류에 비해 인종적으로 ‘열린’ 생각을 가졌다 해도, 동화론자들 또한 결코 원주민들을 백인과 평등한 존재로 간주한 것은 아니었다. 동화의 ‘가능성’을 강조한 것 자체가, 원주민이 잠재적으로 백인과 동등한 지위에 오를 수 있다 해도 그 잠재성이 실현되려면 많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⁵⁴ 그 조건들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백인, 그중에서도 국가 권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엘리트층의 몫이었다. 엘리트들은 원주민 동화 과정을 설계함에 있어 당대 서양의 인종과학과 문명관, 통치성에 의거하고, 또 원주민들이 정착민 사회에 동화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계속하여 변화하는 사회질서, 경제질서, 그

53 Andrew S. Curran (2011), *The Anatomy of Blackness: Science & Slavery in an Age of Enlightenmen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Guyatt (2016), pp. 24-26, 115-194; Smithers (2017), pp. 69-77, 104-16, 133-134, 145-148.

54 Smithers (2017), pp. 43-45, 59-62, 220-222.

리고 정착민 다수의 문화적 태도를 고려하였다. 이렇게 볼 때, 호주와 북미의 원주민 동화 정책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지만, 이는 사실 정착민 국가의 인종 질서와 통치성에 대한 비슷한 사고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되, 다만 동화의 실현 과정에서 고려된 여러 변수들 중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착민 국가의 통치성과 근대적 원주민 동화 정책 사이의 역사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는 미셸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푸코의 설명에 따르면, 근대 이전의 (유럽) 사회에서 통치성을 규정한 것은 가령 누구든 처형할 수 있는 군주의 권한처럼,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이었다. 이에 반해 근대적 생명정치를 규정하는 것은 생명을 부여하는 힘이다. 그 힘은 꼭 의식적이고 가시적인 권력 행사로 표현되지는 않고, 이전에는 가정, 공동체 차원의 것으로 간주되었던 삶의 내밀한 영역들에 국가 차원의 체제와 관계망이 침투하는 식으로 발휘되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 구성원들이 근대적 의료, 보건, 복지, 교육, 치안, 인구조사 등에 갈수록 의존하게 되고, 또 그 수혜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규율과 통제를 스스로 따르고 체득하게 되는 것이 곧 근대적 생명정치의 주요 특질이다. 근대 이전의 통치성에서는 통치권자가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를 상대로 처벌, 전쟁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고 위협하는 지점에서 통치성이 가장 여실히 발휘되었다면, 생명정치에서는 오히려 생명을 보호받는 자들이 통치권력의 촘촘한 그물망 안에 놓이며 삶의 모든 영역을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통제받게 된다. 생명정치의 통치성 역시 본질적으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통치권이라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 결정권이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죽이는 식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명정치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즉 근대적 의료, 복지, 치안 등에서 배제하여 ‘죽도록 방치’하는 식으로 발휘된다.⁵⁵

— www.kci.go.kr
55 Michel Foucault (1990), *The History of Sexuality* (trans. by Robert Hurley), New York:

미국, 캐나다, 호주 역시 늦어도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국가체제가 정비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이런 생명정치가 통치성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근대적 원주민 동화 정책은, 곧 원주민 중 일부를 생명정치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동화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인도주의적 보호 차원의 것으로 이해한 이유를 개념적으로 잘 설명해 준다. 동화주의자들에게 있어, 원주민 아동들이 정착민 사회에 편입되어 근대적 교육, 의료, 보건, 복지, 치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을 돕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한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국가가 개입하여 동화 정책으로 도와주지 않을 경우 원주민들이 도태된다는 암묵적 전제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원주민들의 도태를 당연시하고 기대하는 정착민 식민주의의 태도와 중앙화된 국가권력으로 원주민들의 주류 사회로의 포용을 도모하려는 인도주의적 동화론은 일견 상충해 보이지만, 특히 19세기 말 이후의 근대적 정착민 국가 건설 맥락에서는 본질적으로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었다.⁵⁶

Vintage Books; Michel Foucault (1997), *Society Must Be Defended: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5-76* (trans. by David Macey), London: Penguin.

- 56 보기에 따라 원주민에 대한 정착민 국가의 정책은 단지 그들 일부를 '죽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죽여 나가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세기 중엽 이후 앞서 봤듯 미국, 캐나다 양국에서 연방 차원의 군사작전이 원주민 정복에 앞장섰고 호주에서도 같은 시기 주 정부들이 한층 중앙화된 군사력으로 원주민들에 대한 폭력에 앞장섰다는 점, 또 특히 북미에서 20세기 초-중엽 보호구역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 불임 시술이 만연했다는 점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만하다. 한편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이론적 논의로서, 근대국가의 통치 기제가 푸코가 지적한 바처럼 인구집단에 대한 미시적 통제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백인, 피식민 집단을 대상으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즉 같은 기제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죽이려는' 방식(necropolitics)으로 행사되어 왔다는 아칠 음베크의 이론화를 들 수 있다. Achille Mbembe (2008), "Necropolitics," *Foucault in an Age of Terror: Essays on Biopolitics and the Defence of Society* (ed. by Stephen Morton and Stephen Bygrave), Basingstoke: Palgrave-Macmillan, pp. 152-182. 북미 원주민 대상 강제 불임 시술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Leonardo Pegoraro (2014), "Second-rate Victims: The Forced Sterilization of Indigenous

원주민을 멸절시키려는 방향성과 동화시키려는 방향성이 서로 긴밀히 엮이며 정착민 국가의 생명정치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을 구성했다는 점은, 우선 앞의 논의에서도 엿봤듯 원주민들의 공동체를 해체하고 철저히 개인으로 취급하려는 경향에서 잘 나타난다. 인도주의적 동화론자들이 처음부터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듯, 원주민들을 근대적 ‘개인’으로 탈바꿈시켜 정착민 사회에 동화시키는 일은 원주민들의 공동체적 정체성과 삶의 방식 파괴를 전제로 하였다. 근대 이전의 많은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동체는 원주민들의 유기적인 사회관계와 자아 인식, 자존감을 형성하는 주춧돌이었다. 그렇기에 인도주의적 동화론자들은 원주민 아동을 공동체로부터 분리하여 가급적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에 보내려 했고, 학교에서는 원주민의 언어와 이름, 의례 사용을 금지하며 아동들이 공동체와의 문화적 유대를 상실하도록 하려 했다.⁵⁷ 또한 이런 문화적 폭력에 맞서 원주민 공동체들이 혼령춤(ghost dance), 태양춤(sun dance), 포틀래치(potlatch) 등 새로운 방식으로 공동체간의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며 연대를 도모하자,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이런 문화 행사를 전면 금지하고 원주민들이 저항할 경우 무력으로 응징하였다.⁵⁸

문화 파괴를 통한 원주민 공동체 약화 노력은 자주 국가 주도의 토지

Peoples in the USA and Canada,” *Settler Colonial Studies* 5(2), pp. 161-173. 그러나 네크로폴리틱스 논의가 주로 노예제나 착취형 식민주의에 집중해 온 데서도 볼 수 있듯, 피식민 인구를 ‘적극적으로 죽이는’ 데 치중하는 것은 주변부 주도의 초기 정착민 식민주의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어도, 중앙화된 정착민 국가의 ‘근대적’ 통치의 주안점이라고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네크로폴리틱스 중심의 구도로는 가령 본고에서 논한 동화 정책을 제대로 분석하기 힘들고, 정착민 국가 통치성에 대한 더 적절한 분석들은 ‘죽게 놔두는’ 푸코의 생명정치에서 삶과 죽음의 구획이 인종 및 식민 관계를 경계로 이루어지는 식으로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57 Woolford (2015), pp. 190-195; 구난희(2020), 「캐나다의 어두운 과거사 기억하기: 인디안 기숙학교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54, pp. 191-234; 김재웅(2009), 「미국 원주민 교육의 역사 재음미: 원조와 동화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9(2), pp. 27-50.

58 Ishiguro (2017), p. 132; Hahn (2016), pp. 387-388.

수탈과 긴밀히 연결되어 진행되었다. 19세기 초까지의 토지 수탈이 원주민 네이션과의 교전과 협상, 토지구매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19세기 말 강화된 국가권력 주도의 토지 수탈은 원주민들의 집단적 토지 소유 자체를 해체하는 데 주력했다. 이런 맥락에서 원주민들을 근대적 개인으로 ‘동화’시키려는 노력은 곧 공동체 단위의 경제적 자립 기반과 저항 역량을 약화시키고 무력한 개인들로 파편화하려는 정착민 국가의 의도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다.⁵⁹

북미의 원주민 기숙학교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리처드 헨리 플렛의 문명화 교육 프로젝트부터가, 앞서 보았듯 미연방군이 중서부 대평원 원주민들을 섬멸하려는 전진전을 펼치던 와중에 탄생한 것이었다.⁶⁰ 캐나다 정부에서 플렛의 실험에 큰 관심을 보이며 비슷한 동화 교육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것 역시, 1880년대에 캐나다 서부 원주민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토지 수탈을 가속화하던 상황에서였다.⁶¹ 동화 정책과 토지 수탈의 관계를 선명히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예로서, 원주민 기숙학교를 미국 전역에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인도주의적 동화론자 앨리스 플레처(Alice Fletcher)를 들 수 있다. 플레처는 특히 원주민들의 가정 및 공동체 문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자처하며, 이런 인류학적 지식을 토대로 원주민 아동을 야만적인 부모와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맥락에서, 플레처는 원주민들이 근대적 개인으로 진화하려면 네이션/공동체 단위의 비생산적인 토지 소유에 대한 의존부터 끊어야 한다고 믿었다. 플레처의 주장은 실제로 원주민들을 사유재산을 가진 근대적 시민으로 ‘문명화’시켜준다는 명목하에 연방정부가 중서부 원주민 네이션들의 남은 영토를 일방적으로 몰수한 도즈법(Dawes Act, 1887)의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59 Jacobs (2009), pp. 82-84.

60 Fear-Seagal (2007), pp. 1-14. Jacobs (2009), pp. 84-85.

61 Woolford (2015), p. 68.

미치기도 했다.⁶²

동화 정책은 원주민 공동체들의 공간적 기반을 해체할 뿐 아니라, 세대 간 연결을 약화함으로써 공동체의 재생산 역량에 타격을 입히고자 하였다. 북미의 기숙학교 제도는 아동들의 자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부모를 비롯한 기성세대 원주민들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원주민들의 공동체적 결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힘들게 하였다. 특히 구비 문화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공유가 공동체 의식의 지속에 매우 중요한 원주민 사회에서, 기숙학교 제도가 조장한 세대간 단절은 원주민들이 자신의 네이션 및 부족에 대한 역사적 기억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강한 집단적 자존 능력을 유지하게 힘들게 하였다.⁶³ 영향을 받은 것은 학교에 보내진 아동들만이 아니었다. 민담과 노래, 구술사를 들려줄 대상인 아동들이 곁에 없게 되자, 부모 세대 또한 구비 문화의 반복을 통해 집단적 기억을 되새길 기회가 줄고 공동체적 정체성이 차츰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⁶⁴

북미의 동화 정책이 세대 간의 문화적 단절에 집중했다면, 호주의 동화 정책은 생물학적 단절에 치중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앞서 보았듯 호주의 정책에서는 원주민 아동들을 영구히 부모로부터 떼어냄으로써, 기성세대 원주민들의 문화와 정체성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62 Jacobs (2009), p. 145.

63 Barker, Rollo and Lowman (2017), p. 162.

64 Fear-Seagal (2007), pp. 51-54. 본고에서 단편적으로 다루고 넘길 주제는 아니나, 정착민 국가의 다각적인 멸절 정책에 원주민 아동과 공동체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굴복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피식민 집단들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미 원주민들도 오히려 식민자들의 기법을 역이용하여 저항의 발판으로 삼기도 하였다. 가령 20세기 중엽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서 범원주민 저항운동, 권리운동이 꽃필 수 있게 한 중요한 사회문화적 토대 중 하나는, 여러 지역/네이션 출신을 모아놓은 기숙학교의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원주민 아동들이 형성하기 시작한 새로운 인적 관계와 연대 의식이었다. Fear-Seagal (2007), pp. 179, 224-225, 282-297; Woolford (2015), pp. 132-133; Robert Warrior (2016), "The Indian Renaissance, 1960-2000: Stumbling to Victory, or Anecdotes of Persistence?," *The Oxford Handbook of American Indian History* (ed. by Frederick E. Hoxi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29-148.

차단해 버렸다. 나아가 1930년대에 원주민 혼혈아 동화 정책이 비로소 호주 연방 전체의 정책으로 승격되도록 견인한 아버 네빌(A. O. Neville)과 세실 쿡(Cecil Cook)이 정책의 골자를 “번식에 의한 소멸”(breeding out)이라 표현하곤 한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 호주 정책의 근거에는 재생산을 차단함으로써 원주민들을 몇 세대에 걸쳐 소멸시키려는 우생학적인 발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네빌과 쿡에 의하면 원주민 혼혈아들이 백인 가정에서 자라고 이후 백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도록 하는 일을 몇 세대 동안 반복하면, (백인의 우월한 형질에 힘입어) 원주민으로서의 속성이 머잖아 희미해지며 백인 사회에 생물학적으로 동화될 것이었다. 동시에 이들은 사회진화론의 견지에서,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원주민 기성세대는 스스로의 문화적, 생물학적 결함으로 인해 몇 세대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 믿었다. 원주민들이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예상은 다행히 빗나갔지만, 세대 간 연결을 과격하게 단절시키려 한 호주의 정책이 원주민 공동체를 극적으로 약화시켰음은 부인하기 힘들다.⁶⁵

개인 단위의 동화를 통해 원주민들의 공동체적 힘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은 이전에도 제퍼슨, 그레이 등에 의해 조금씩 상상된 바 있으나, 그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권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었다. 푸코가 지적하듯 근대국가 특유의 통치성은 단지 국가권력이 강화되었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전에는 국가의 영역으로 간주되지 않던 사회 생활의 영역에 까지 통치 기제가 넓고 깊게, 그리고 은밀하게 스며드는 데서 나타난다. 이런 확장된 통치 기제를 활용하여 국가가 개개인의 몸과 내밀한 삶의 영역에 깊이 개입하면서 동시에 주민 전체를 인구집단으로 통계화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푸코가 생명정치라 칭한 근대국가 통치성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⁶⁶

65 Jacobs (2009), pp. 66–68; Smithers (2017), pp. 324–339; Manne (2004), pp. 217–243.

66 Michel Foucault (1977; 1995),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trans. by Alan Sheridan), New York: Vintage Books.

미국, 캐나다, 호주는 19세기 후반부터 이런 근대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세 국가에서 푸코가 주목한 유럽 국가들과 확연히 다른 근대적 통치성이 나타난 지점이 있다면, 이는 원주민이라는 존재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였다. 이들 정착민 사회에서는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원주민들을 국가 통치의 바깥에 두며 오로지 배제하고 축출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에 비해 19세기 말부터의 동화 정책은 원주민들이 정착민 국가의 생명정치 안으로 수용될 여지를 열어주려 했다는 점에서, 일견 원주민에 대해 이전보다 한층 포용적인 태도로 전환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과 공동체라는 차원에 주목해서 보면, 미국, 캐나다, 호주의 동화 정책이 근대적 통치 기제를 원주민들 대상으로 확장 적용한 방식은 원주민을 멸절시키려는 정착민 식민주의의 방향성에 결코 역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령 세 곳 모두에서 19세기 말부터 국가가 원주민들의 출산과 양육 방식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원주민에 대한 각종 통계 정보와 인류학적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집단으로서 관리하려는 전형적인 근대적 통치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북미 기숙학교와 호주 혼혈아 정책을 주도한 인도주의적 동화론자들에 대한 논의에서 엿봤듯, 원주민에 대한 정착민 국가의 인식은 처음부터 식민주의적 고려와 인종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렇기에 정착민 국가의 과학적 지식 및 근대적 통치 기제가 결국 식민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곤 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로, 민속지학자 월터 스펜서(Walter Baldwin Spencer)와 프랜시스 길렌(Francis James Gillen)의 연구가 호주 원주민 정책에 미친 영향을 들 수 있다. 스펜서와 길렌은 1899년 내놓은 연구에서, 자신들이 호주 내륙의 아룬타(Arunta) 원주민 부족에 대해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스펜서와 길렌에 의하면, 아룬타 사람들은 성관계와 임신 사이의 상관관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대지를 떠돌던 영혼이 여성의 몸에 깃들면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라 믿고 있었다. 두 민속지학자의 ‘발견’은 곧 큰 관

심을 받으며 호주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인류학적 발견으로 간주되었다. 학계의 열렬한 반응은 무엇보다, 서양 인류학계에서 오래전부터 널리 받아들여져 온 가설을 두 사람의 발견이 비로소 뚜렷이 입증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존 맥레넌(John Ferguson McLennan) 등 인류학자들의 저작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 가설은, 원시 상태에 머무른 부족들이 문명화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모계 사회구조, 그리고 그 근저에 있는 성적 방종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 부족 사회에서는 무절제하고 개방된 성생활로 인해 여성이 임신해 그 것이 어느 남성과의 관계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으며, 나아가 여러 상대와 워낙 일상적으로 성관계가 맺어지기에 이를 임신과 결부된 것으로 인식하지조차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론의 근저에 가부장제를 문명화된 사회질서의 출발점으로 보는 서양 중심주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이론을 입증한 것으로 간주된 스펜서와 길렌의 민족지학적 발견 근저에는 호주 원주민들을 가장 미개하며 문명 세계와 동떨어진 존재로 바라보려는 정착민 사회의 태도가 짙게 묻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이 ‘발견’의 유명세에 힘입어 호주 원주민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로 추앙받았고, 그 결과 스펜서는 1911년 북부 영토의 원주민 보호관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보호관으로서 스펜서는 혼혈 원주민 아동을 생모로부터 분리하는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추진하였다. 그의 발견이 처음부터 원주민 여성을 성적으로 방종하고 모성에 대한 일말의 인식조차 가지지 못한 존재로 ‘재확인’해 주는 것이었음을 상기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보였다. 스펜서의 사례는 근대적 지식과 통치기제가 정착민 국가에서는 원주민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식민 폭력에 단지 과학과 인도주의의 허울을 씌워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잘 보여 준다.⁶⁷

67 Patrick Wolfe (1999), *Settler Colonial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Anthropology: The Politics and Poetics of an Ethnographic Event*, London: Cassell, pp. 9-25.

근대적 통치성과 정착민 식민주의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 주는 북미의 예로는, 원주민 혈통(blood quantum)을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19세기 말부터의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는 가령 특정 원주민 네이션의 구성원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인정받으려면 해당 네이션의 피가 적어도 1/2 이상 섞여 있어야 한다는 식의 규정으로서, 이런 정책이 불완전하게나마 실현 가능하려면 일단 국가가 개개인의 생체 정보와 출생, 결혼, 가계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했다. 이런 구체적인 인구 정보를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들을 원주민, 흑인, 백인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별개의 인구집단으로 취급하고 관리하려 했다는 점에서, 원주민 혈통 규정 정책은 정착민 국가들에서 19세기 말부터 두드러진 근대적 통치성의 단면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⁶⁸

더불어 이 정책은 식민주의와 긴밀히 연관된 것이었다. 구성원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각 원주민 네이션의 인구를 인위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정책의 주된 효과였기 때문이다. 주류 사회에서는 애써 외면하려 하곤 했지만, 사실 호주에서처럼 북미에서도 원주민들은 백인을 포함한 다른 인구집단과 늘 접촉이 잦았고 통혼과 성관계, 그에 따른 혼혈인 출생도 끊이지 않았다. 많은 원주민 공동체들에서는 유럽인들이 처음 북미에 진출했을 때부터 이미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혼혈인뿐 아니라 다른 부족 출신의 원주민, 도망노예, 그리고 정착민 사회로부터 이탈해 온 백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하곤 했다. 이런 유연한 대처는 질병과 침략, 생태환경 변화 등으로 인구 감소를 겪으면서도 원주민 공동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⁶⁹ 그렇기에 ‘객관적’인 혈통 구분을 토대로 구성원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정책은, 피부색 불문하고 사회관계와 문화적 유대를 공유하는 사람들 모두를 구성원으로 간주해 온 원주민 공동체들의 자주권과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처사였다.

68 Katherine Ellinghaus (2017), *Blood Will Tell: Native Americans and Assimilation Policy*,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69 Guyatt (2016), pp. 133-135.

실제로 정책의 결과 많은 원주민들이 졸지에 자신의 공동체에 머무를 자격을 잃은 채, 주류 사회에 편입되도록 강요받았다. 원주민 아동 동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원주민 혈통 규정 정책은 원주민들을 근대국가에 귀속된 개인으로 탈바꿈해 나간다는 기치하에, 국가가 원주민 공동체에 깊이 개입하여 안에서부터 파괴해 나가려는 식민주의적 정책이었다. 구성원을 잃은 원주민 공동체들은 말할 나위 없이 정착민들의 토지 수탈에 저항할 힘을 유지하기 힘들었으며, 또한 앞서 언급한 도즈법 등이 원주민들의 집단적 토지소유를 해체하면서 그래도 가구당 일정 규모의 토지를 가질 수 있게 해 준 상황에서, 원주민 혈통 규정 정책은 일부 원주민들을 주류 사회에 속한 '개인'으로 둔갑시킴으로써 그런 사유지나마 요청할 자격조차 박탈하였다.⁷⁰ 호주의 혼혈 원주민 아동 분리법 역시 국가가 혈통을 핑계로 특정 개인들의 원주민 '자격'을 일거에 박탈한 조치로서, 마찬가지로 원주민들의 토지 소유가 급격히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다.⁷¹

원주민들이 저절로 '소멸'해 가고 있다는 정착민 사회의 믿음과 달리, 실상 원주민 입지의 축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원주민 공동체의 성원을 줄여 나간 정착민 국가의 통치 기제에 의해 실현된 것이었다.

종합하자면, 미국, 캐나다, 호주는 19세기 말부터 원주민들을 본격적으로 근대적 통치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으며, 과학적 접근과 인도주의를 표방하였지만 새로운 통치 방식의 본질은 원주민 공동체의 공간적 존립 기반과 인구학적, 문화적 재생산 역량을 잠식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원주민들을 국가에 종속된 무력한 개인으로 파편화·주변화하는 것이었다. 원

70 Ellinghaus (2017); Jacobs (2009), pp. 63; Smithers (2017), pp. 253-254, 313-315; Woolford (2015), p. 254.

71 Mark McMillan and Cosima Mcrae (2015), "Law, Identity and Dispossession: The Half-Caste Act of 1886 and Contemporary Legal Definitions of Indigeneity in Australia," *Indigenous Communities and Settler Colonialism: Land Holding, Loss and Survival in an Interconnected World* (ed. by Zoë Laidlaw and Alan Lester),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pp. 233-244.

주민 아동 동화 정책은 정착민 국가의 이런 근대적 식민통치에서 핵심적인 한 꼭지로 기능했다. 동화 정책은 원주민들이 스스로는 문명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모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인종적 편견에 기초한 것이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원주민 아동의 부모 역할을 대신하려 함으로써 그런 편견에 공적인 당위성 및 근대적 지식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어린아이들만 정착민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근대적’ 개인으로 키워 생존을 용인하고 기성세대 원주민은 식민팽창의 거센 물결 앞에 소멸되어 가도록 방치하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고 볼 때, 동화 정책은 본질적으로 정착민 국가 특유의 식민주의적 생명정치를 조용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치기체에 다름 아니었다.

‘저절로’ 멸절되어 가는 원주민들 중 일부만 동화 정책을 통해 구제한다는 발상은, 그 전제에 있어 문명과 백인성에 대한 인종주의적, 서양중심주의적 관념, 그리고 식민팽창을 불가항력으로 치부하며 정상화(naturalize)하는 태도를 깊이 깔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동화 정책 근거에 있는 인도주의적 원주민 보호론은 19세기 초에 처음 제기될 때부터 표면적으로는 늘 정착민 식민주의의 폭력성과 대척점에서 있었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는 결국 정착민 식민주의와 상보적이었다고 봐야 한다. 지속적인 식민팽창 자체는 저지하지 않으면서 원주민 중 일부만 생명정치에 편입시켜 주겠다는 태도는, 원주민의 땅 위에 펼쳐진 정착민들의 국가체제와 사회구조가 계속하여 지속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당연시하고 그럼으로써 강력히 뒷받침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인도주의적 동화 정책은 단지 주변부의 거친 식민 폭력을 중앙화된 근대적 통치기체로 대체한 것이었다.

물론 식민 방식의 전환이 아무런 차이를 낳지 않은 것은 아니다. 동화 정책을 위시한 새로운 식민 통치기체는 이전보다 한층 깊숙이 원주민들의 삶에 파고들어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공동체적 기반을 잠식하며, 정착민 국가에서 원주민들이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렵게 했다. 나아가 정착민 식민주의 초기의 폭력적 양상이 어떻게 보아도 진보적인 근대국가의 이미지와 조

화시키기 힘든 것이었다면, 동화 정책은 정착민들의 폭력 자체를 순화하거나 저지하는 데에는 치중하지 않되 대신 원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인도주의적 ‘보호’에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정착민 국가의 폭력성을 시야에서 가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Jefferson, Thomas (1785; 1832),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Boston: Lilly and Wait.
<https://tile.loc.gov/storage-services/service/gdc/lhbc/b/04902/04902.pdf> (접속일: 2023.2.26.)
- Grey, George (1840), *A Report upon the best Means of promoting the Civilization of the Aboriginal Inhabitants of Australia*, reprinted in George Grey (1841), *Journals of Two Expeditions of Discovery in North-West and Western Australia*, London: T. and W. Boone. <https://gutenberg.net.au/ebooks/e00055.html> (접속일: 2023.2. 26.)

2차 자료

- 구난희(2020), 「캐나다의 어두운 과거사 기억하기: 인디언 기숙학교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54, pp. 191-234.
- 김성엽(2022), 「기회의 땅: 건국기 차별적 이주의 자유와 미국 인종분리의 기원」, 『미국사연구』 56, pp. 1-54.
- 김성엽(2020), 「북미 대륙사와 정착민 식민주의에 비추어 재해석한 미국 연방제의 기원」, 『서양사론』 146, pp. 8-49.
- 김재웅(2009), 「미국 원주민 교육의 역사 재음미: 원조와 동화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9(2), pp. 27-50.
- 김혜주(2022), 「19세기 영국 백신반대 부모의 시민 됄과 “매독 아이”」, 『인문논총』 79(4), pp. 7-36.
- 오영인(2021), 「20세기 전환기 미국 원주민 동화교육과 새로운 시민정체성을 찾아서」, 『동국사학』 72, 369-405.
- Ablavsky, Gregory (2021), *Federal Ground: Governing Property and Violence in the First U.S. Territor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 Attwood, Bain (2022), *Empire and the Making of Native Title: Sovereignty Property and Indigenous Peop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ker, Adam J., Toby Rollo, and Emma Battell Lowman (2017), "Settler Colonialism and the Consolidation of Canada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Routledge Handbook of the History of Settler Colonialism* (ed. by Edward Cavanagh and Lorenzo Veracini), London: Routledge.
- Benton, Lauren A, and Lisa Ford (2016), *Rage for Order: The British Empire and the Origins of International Law 1800-1850*,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Benton, Lauren A., Adam Clulow, and Bain Attwood (eds.) (2017), *Protection and Empire: A Global Histo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vanagh, Edward and Lorenzo Veracini (eds.) (2017), *The Routledge Handbook of the History of Settler Colonialism*, London: Routledge.
- Curran, Andrew S. (2011), *The Anatomy of Blackness: Science & Slavery in an Age of Enlightenmen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urthoys, Ann and Jessie Mitchell (2013), "The Advent of Self-Government, 1840s-90," *The Cambridge History of Australia, Volume 1: Indigenous and Colonial Australia* (edited by Alison Bashford and Stuart Macintyre), Victoria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49-169.
- Ellinghaus, Katherine (2017), *Blood Will Tell: Native Americans and Assimilation Policy*,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Fear-Segal, Jacqueline (2007), *White Man's Club: Schools, Race, and the Struggle of Indian Accultur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Firpo, Christina and Margaret D. Jacobs (2018), "Taking Children, Ruling Colonies," *Journal of World History* 29(4), pp. 529-562.
- Ford, Lisa (2021), *The King's Peace: Law and Order in the British Empi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ord, Lisa (2010), *Settler Sovereignty: Jurisdiction and Indigenous People in America and Australia, 1788-183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oucault, Michel (1997), *Society Must Be Defended: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5-76* (trans. by David Macey), London: Penguin.
- Foucault, Michel (1990), *The History of Sexuality* (trans. by Robert Hurley), New York: Vintage Books.
- Foucault, Michel (1977; 1995),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trans. by Alan Sheridan), New York: Vintage Books.
- Fritz, Christian (2008), *American Sovereigns: The People and America's Constitutional Tradition before the Civil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rstle, Gary (2017), *Liberty and Coercion: The Paradox of American Government from the Founding to the Pres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reer, Allan (2019), "Settler Colonialism and Beyond," *Journal of the Canadian Historical Association* 30(1), p. 61-86.

- Guyatt, Nicholas (2016). *Bind Us Apart: How Enlightened Americans Invented Racial Segreg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hn, Steven (2016). *A Nation Without Borders: The United States and Its World, 1830-1910*, New York: Penguin Random House.
- Heartfield, James (2011). *The Aborigines' Protection Society: Humanitarian Imperialism in Australia New Zealand, Fiji, Canada, South Africa, and the Congo, 1836-190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Ishiguro, Laura (2017), "Northwest North America (Canadian West) to 1900," *The Routledge Handbook of the History of Settler Colonialism* (ed. by Edward Cavanagh and Lorenzo Veracini), London: Routledge.
- Jasanoff, Maya (2011). *Liberty's Exiles: American Loyalists in the Revolutionary World*, New York: Alfred A. Knopf.
- Lake, Marilyn and Henry Reynolds (2008). *Drawing the Global Colour Line: White Men's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hallenge of Racial Equalit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ster, Alan and Fae Dussart (2014). *Colonization and the Origins of Humanitarian Governance: Protecting Aborigines Across the Nineteenth-Century British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cintyre, Stuart (2020). *A Concise History of Australia*, 5th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nne, Robert (2004), "Aboriginal Child Removal and the Question of Genocide, 1900-1940," *Genocide and Settler Society: Frontier Violence and Stolen Indigenous Children in Australian History* (ed. by Moses A. Dirk), New York: Berghahn Books, pp. 217-243.
- Mbembe, Achille (2008), "Necropolitics," *Foucault in an Age of Terror: Essays on Biopolitics and the Defence of Society* (ed. by Stephen Morton and Stephen Bygrave), Basingstoke: Palgrave-Macmillan, pp. 152-182.
- McMillan, Mark and Cosima Mcrae (2015), "Law, Identity and Dispossession: The Half-Caste Act of 1886 and Contemporary Legal Definitions of Indigeneity in Australia," *Indigenous Communities and Settler Colonialism: Land Holding, Loss and Survival in an Interconnected World* (ed. by Zoë Laidlaw and Alan Lester),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pp. 233-244.
- Nettelbeck Amanda (2019). *Indigenous Rights and Colonial Subjecthood: Protection and Reform in the Nineteenth-Century British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chols, David Andrew (2008). *Red Gentlemen & White Savages: Indians, Federalists, and the Search for Order on the American Frontier*, Charlottesville, VA: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 Pegoraro, Leonardo (2014), "Second-rate Victims: The Forced Sterilization of Indigenous Peoples in the USA and Canada," *Settler Colonial Studies* 5(2), pp. 161-173.
- Read, Peter (1981; 1998), *The Stolen Generations: The Removal of Aboriginal Children in New South Wales 1883 to 1969*, 2nd ed. Sydney: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Aboriginal Affairs.
- Saler, Bethel (2015), *The Settlers' Empire: Colonialism and State Formation in America's Old Northwes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mithers, Gregory D. (2017), *Science, Sexuality, and Race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1780-1940*, revised edi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nyder, Christina (2017), "The Rise and Fall and Rise of Civilizations: Indian Intellectual Culture during the Removal Era,"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104(2), pp. 386-409.
- Swartz, Rebecca (2019), *Education and Empire: Children, Race and Humanitarianism in the British Settler Colonies, 1833-1880*. Cham: Palgrave Macmillan.
- Taylor, Alan (2021), *American Republics: A Continental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783-1850*,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Canada (2015), *Final Report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Canada, Volume One, Summary: Honouring the Truth, Reconciling for the Future*, 2nd printing ed., Toronto: James Lorimer & Company Ltd
- Veracini, Lorenzo (2010), *Settler Colonialism: A Theoretical Overview*,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Warrior, Robert (2016), "The Indian Renaissance, 1960-2000: Stumbling to Victory, or Anecdotes of Persistence?," *The Oxford Handbook of American Indian History* (ed. by Frederick E. Hoxi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29-148.
- Wolfe, Patrick (1999), *Settler Colonial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Anthropology: The Politics and Poetics of an Ethnographic Event*, London: Cassell.
- Wolfe, Patrick (2006), "Settler Colonialism and the Elimination of the Native,"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8(4), 387-409.
- Woolford, Andrew (2015), *This Benevolent Experiment: Indigenous Boarding Schools, Genocide, and Redres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원고 접수일: 2023년 7월 11일, 심사완료일: 2023년 8월 4일,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8일

ABSTRACT

Humanitarian Elimination

Kim, Sung Yup*

Indigenous Assimilation, State Building, and
Settler Bio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Canada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Canada launched comprehensive assimilation policies targeting indigenous children. These initiatives took shape amidst ongoing concerns with humanitarian protection. Emerging in the context of early nineteenth century Anglo-American imperial discourse, humanitarian protectionists argued that in order to civilize indigenous peoples while protecting them from settler violence, centralized state power should reach deep into indigenous communities, reshaping every aspect of their existence from familial relations, sexuality, and communal life to everyday habits. In implementing this idea with the vastly expanded state power of the late nineteenth century, governments in all three countries sought to ‘rescue’ indigenous children from the ‘degenerative’ influence of their parents’ generation, and ultimately incorporate them into the racial and gendered order of settler society. The U.S. and Canadian assimilation policies hinged on state-run boarding schools for indigenous children, whereas the Australian policy focused on the biological absorption of “half-caste” indigenous children through adoption into whit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families. Despite these differences, underlying the assimilation policies of all three countries was what can be termed a new settler biopolitics, in which only the young generation of indigenous peoples, on condition that they are successfully transitioned into modern individuals, would be allowed to survive, while the older generation was categorically excluded from the settler states' biopolitical regime and thus slated for extinction. While departing from the more rampant and conspicuous colonial violence of earlier periods, ultimately what the new state-led initiatives sought to achieve, armed with the technologies of modern governmentality, was firmly in line with settler colonialism's ongoing drive to eliminate indigenous presence by weakening the collective resources and structural foundations of indigenous communities. In fact, by professing a concern for humanitarian protection and scientific management, the new mode of settler governmentality enabled settler states to more quietly but effectively facilitate the elimination of indigenous peoples.

Keywords Indigenous Peoples, Settler Colonialism, Humanitarianism, Civilization, Assimilation, Modern State, Biopolitics